기술금융 활용을 위한 실무 가이드북

2010. 9

본 자료는 산기협 홈페이지(http://www.koita.or.kr)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정책개발팀 노민선 과장
(☎ 02-3460-9030, cool@koita.or.kr)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머 리 말

우리나라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 회복국면에 진입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R&D 자금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자금에 애로를 느낀다는 응답이 대기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금융(Innovation Financing)은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기업금융의 한 분야로서 기술이 개발되어 사업화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을 말하며, 특히 무형자산이 담보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금융관행 하에서 미래수익을 가져올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하여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 내지는 기술혁신형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기술금융시장의 시장실패 보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자원 배분 확대, 금융지원을 통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촉진 등을 위한 목적으로 금융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기술금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금융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는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어서 그동안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가이드북은 정부의 기술금융 지원제도를 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가이드북을 발간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담당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내용 중 문의사항이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본회에 연락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가이드북이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0. 9.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정 책 개 발 팀

Contents

01. 기술금융 개요

1. 기술금융의 정의 및 목적 ····· 3
2. 기술금융의 유형 ····· 4

02. 융자금융

1. 중소기업진흥공단 ····· 9
   1-1. 공통사항 ····· 9
   1-2. 창업기업지원자금 ····· 12
   1-3.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 13
   1-4. 신성장기반자금 ····· 14
   1-5. 긴급경영안정자금 ····· 15
   1-6. 사업전환지원자금 ····· 17
   1-7.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 19

2. 기업은행 ····· 20
   2-1. 혁신형 기업대출 ····· 20
   2-2. 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 21

3. 한국산업은행 ····· 24
   3-1. 기술력평가대출 ····· 24
   3-2. 기술가치평가대출 ····· 25
   3-3. KDB 기술거래금융 ····· 26
   3-4. KDB 스타터스-론(Starters-loan) ····· 28
   3-5. 기술혁신기업 및 경영혁신기업 우대대출 ····· 29
   3-6. 혁신형 중소기업 전용 채권 인수 ····· 30

4. 한국정책금융공사 ····· 32
   4-1. 간접대출(On-lending) ····· 32
   4-2. 신용위험분담 ····· 34
   4-3. 간접투자 ····· 35

03. 투자금융

1. 투자기관 ····· 39
   1-1. 창업투자회사 ····· 39
   1-2.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40

2. 투자유형 ····· 42
2-1. 지분출자 ····· 42
2-2. 주식연계채권 ····· 43
2-3. 프로젝트 투자 ····· 43

3. 투자절차 및 검토 ····· 45

4. 투자유치 전략 ····· 47

04. 보증금융

1. 기술보증기금 ····· 53
1-1. 기술보증제도 ····· 53
1-2. 기술평가제도 ····· 65

2. 신용보증기금 ····· 74
2-1. 신용보증 ····· 74
2-2. 보증연계투자 ····· 83
2-3. 유동화회사보증 ····· 85
2-4. 신용보험 ····· 87

부록

1. 융자지원 제한업종(중소기업진흥공단) ····· 95
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중소기업진흥공단) ····· 96
3.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 98
4. 지식서비스업(중소기업진흥공단) ····· 112
5. 제조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진흥공단) ····· 113
6. 기술혁신 중소기업 범위(기업은행) ····· 114
7. 기술담보대출 제출서류(기술보증기금) ····· 119
8. 2009년 이후 결성된 벤처캐피탈의 투자조합 ····· 120
9. 기술혁신선도형 기업의 범위(기술보증기금) ····· 123
10. 혁신형 지식서비스 산업(기술보증기금) ····· 124
11. 보증료율 감면대상(기술보증기금) ····· 125

01

기술금융 개요

1 기술금융의 정의 및 목적

기술금융의 정의

○ 광의의 기술금융

– 기술개발 → 창업 → 사업화 → 성장 등 기술혁신 전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술력 중심"의 평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업금융

○ 협의의 기술금융

– 혁신형 중소기업[1]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융자, 보증 등의 금융행위

⇒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기업금융의 한 분야로서 기술이 개발되어 사업화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을 말하며, 연구개발을 포함한 기술혁신 활동과 사업화 과정에서 지원되는 투자, 융자, 보증 등 자금지원 형태를 불문한 총체적 금융행위를 의미함

기술금융의 목적

○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 기술 등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고, 담보와 실적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사항이 많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 기술금융시장의 시장실패 보완

– 높은 불확실성(Uncertainty)과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등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기능과 괴리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기술금융시장의 시장실패를 보완

○ 기술금융의 가용성 확대

– 기업 R&D 투자의 대부분이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자원 배분 확대

○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촉진

– 기술금융의 파급효과 측면에서 사회적 수익률이 사적 수익률보다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

---

1) 기술 또는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벤처기업,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경영혁신형 중소기업)를 의미함
* OECD(Oslo Manual, '05)는 기업혁신을 기술혁신(제품혁신, 공정혁신)과 경영혁신(조직혁신, 마케팅혁신)으로 구분함

2 기술금융의 유형

(1) 융자금융

■ 목적

○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화자금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 대상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진단·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이 일정 등급 이상인 기업

■ 종류

○ 정책융자

– 정부기관에서 융자의 신청 및 접수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정부기관(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및 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

○ 민간융자

–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인증서를 받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의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로 신용대출을 지원

(2) 투자금융

■ 목적

○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기업에 무담보 주식투자 형태로 지원

⇒ 기업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통해 신규기술 등의 R&D를 수행하고, 투자자는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로 산업의 신동력 육성

■ 대상

○ 창의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 혹은 벤처기업

○ 투자위험이 높아 전통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공급받기 힘들거나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신기술사업자

■ 종류

○ 투자금융은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을 의미하며, 크게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구분할 수 있음[2)]

벤처캐피탈의 특성

-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투자기업과 함께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투자기업의 경영성과를 함께 나누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음
  · 투자기업이 속해있는 시장과 성장전망에 관심이 많으며, 5년 정도의 기간 안에 투자기업이 산업 내 주력기업으로 성장하여 커다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함
- 투자형태는 융자가 아닌 지분형태이며, 투자 후 경영지원 기능도 수행함
- 투자 후 자금회수는 원리금 상환보다는 IPO[3], M&A, 환매 등의 방법을 주로 추구함

〈벤처캐피탈과 일반금융기관과의 비교〉

구분	투자형태	회수방법	성과보수	리스크
벤처캐피탈	투 자	IPO, M&A 등	경영성과에 따라 큰 차이	높 음
일반금융기관	융 자	일정기간후 원리금 회수	일정금리	낮 음

(3) 보증금융

■ 목적

○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과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공적기관이 채무의 이행을 보증함으로써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술보증과 일반보증의 차이〉

구분	기술보증	일반보증
평가(심사)의 중점사항	기술성·사업성 평가 (장래 성장전망 위주 평가)	경영전반, 신용도 등 (과거실적 및 현재업황 위주 심사)
주요 평가(심사)항목	– 경영 및 기술능력 – 기술수준 – 시장성 및 수익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경영전반·영업상황 – 사업전망 –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
보증금액사정	계획사업 수행에 따른 소요자금 범위	1회전 운전자금(당기매출액의 1/3수준) 또는 소요자금 범위내

■ 대상

○ 기술보증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용보증 :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의 각종 채무를 보증하여 담보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기업

2) 본 가이드북에서 투자금융의 주요 내용은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기술함

3)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로 사전적으로는 기업공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는 의미로 통용됨

종류

○ 기술보증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의해 평가, 발급받은 기술보증서를 매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부(保證書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신용보증

– 물적담보가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보증기관별 신용보증 업무내용 비교[4]〉

구 분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설립근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설립목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원활화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 채무보증 – 신용정보의 효율적관리 운용
기금조성	정부출연, 금융기관 출연	
업무내용	기본재산관리	기본재산관리
	기술신용보증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관리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관리
	경영지도	경영지도
	구상권행사	구상권행사
	재보증	재보증
	–	신용보험
보증종류	–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시설대여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신보, 기보) – 제2금융권보증, 사채보증, 사채인수 보증, P-CBO 보증, 전자상거래담보용보증(신보, 기보) – 무역어음인수보증, 납세보증(신보) – 사채인수보증(기보)	

4)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02

융자금융

1 중소기업진흥공단

1-1 공통사항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융자지원 제한업종(부록 1)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

■ 융자한도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지방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①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② 협동화·협업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③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①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② 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 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⑤ 업력 5년 미만 기업, ⑥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융자금리

○ 융자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5] 대출 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분기별(1, 4, 7, 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bc.or.kr)에 공지

* 기업평가등급(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시의 기업평가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의 신청 및 접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 중 일부 자금은 주식·사채 인수 방식으로 병행 지원(성장공유형 자금지원)

■ 융자대상 결정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진단·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이 일정 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기술사업성 전용자금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업평가등급으로 산정

* 일반자금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재무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비중 반영을 최소화

* '09.7월 이후 5인 이상 추가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가에서 우대

5) 연·기금, 체신예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공공투자나 중소기업 지원 등 공공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치한 기금

■ 융자제한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평가등급 B+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등급 이상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자산규모 50억원 이상 기업 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기업 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기업은 융자 대상으로 포함)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부록 2)을 초과하는 기업
(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과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제외)

■ 융자시기

○ 2010. 1. 7 ~ 자금 소진시까지, 매월 구분 접수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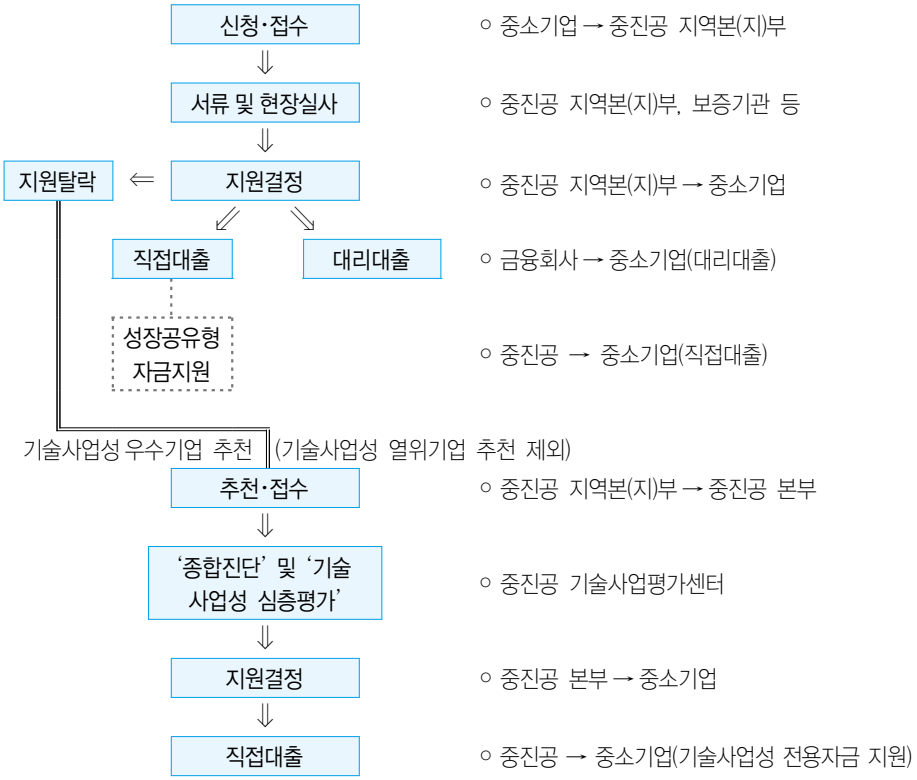

융자 문의 및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

○ 신청양식 및 관련서류(부록 3)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b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역본(지)부	전화	지역본(지)부	전화	지역본(지)부	전화
서울 (여의도)	02)769-6602,811	전남서부 (무안)	061)280-8000	경기북부 (고양)	031)920-6700
서울동남부 (서초)	02)2156-2213~4	전남동부 (순천)	061)724-1056	충북 (청주)	043)230-6811~2
대구·경북 (대구)	053)601-5300	대전·충남 (대전)	042)866-0114,23	전북 (전주)	063)210-9900
경북중서부 (구미)	054)476-9314~6	충남북부 (천안)	041)621-3687	경남 (창원)	055)212-1350
경북동부 (포항)	054)223-2041~3	인천	032)450-0521	강원 (춘천)	033)259-7622,33
부산	051)630-7400	경기 (수원)	031)259-7921,91	강원영동 (강릉)	033)655-8870

지역본(지)부	전화	지역본(지)부	전화	지역본(지)부	전화
광주·전남 (광주)	062)600-3000	경기서부 (시흥)	031)496-1083~4	울산	052)703-1100
제주	064)751-2054	경남서부 (진주)	055)756-3060		

1-2 창업기업지원자금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중인 자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의 중소기업

○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 등록 필요)

지원범위

○ 시설자금

- 기계·설비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이 해당하며, 업체당 1회로 제한), 임차보증금 등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조건

○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분기별로 연동)

  * 2010년 3/4분기 기준 3.71%이며,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30억원 이내(운전자금 5억원 이내)

대출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금융기관 대리대출

지원규모

○ 지원예산 : 11,000억원, 지원기업 : 3,000개사 내외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p.11-p.12)

1-3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부록 4), 제조관련 서비스업(부록 5)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지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기계설비, 시험검사장비도입 등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지원조건

○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분기별로 연동)
  * 2010년 3/4분기 기준 3.71%이며,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20억원 이내(운전자금 5억원 포함)

대출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금융기관 대리대출

지원규모

○ 지원예산 : 1,580억원, 지원기업 : 790개사 내외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p.11-p.12)

1-4 신성장기반자금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녹색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업 등의 신성장동력 산업 중소기업 및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기반 확충 도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

지원범위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이 해당하며, 업체당 1회로 제한), 임차보증금 등

○ 운전자금
-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혁신형기업,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협동화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지원조건

○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분기별로 연동)
  * 2010년 3/4분기 기준 4.08%이며,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승인기업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30억원 이내(운전자금 5억원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승인기업 시설자금 40~45억원 이내(운전자금 5~30억원 이내)

대출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금융기관 대리대출

지원규모

○ 지원예산 : 11,600억원, 지원기업 : 2,500개사 내외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p.11~p.12)

1-5 긴급경영안정자금

원부자재 가격급등, 구조조정, 재해피해 등 대내외 여건변화로 인한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과 초기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록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록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범위

○ 긴급경영안정사업

–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 비용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진공 집중관리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피해 기업 또는 외화대출에 따른 피해 기업
-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對北 투자 모기업 또는 對北 교역업체(일반교역 업체 제외)
-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 L/C(Letter of Credit, 신용장),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인수도 조건),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지급도 조건), Local L/C(내국 신용장),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M/T(Mail Transfer, 우편환), 구매확인서, O/A(Open Account, 외상거래),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Purchase Order, 구매주문)

■ 지원조건

○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분기별로 연동)

* 2010년 3/4분기 기준 4.08%이며,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분기별로 연동)

* 2010년 3/4분기 기준 4.08%이며,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 최장 1년 이내)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10억원 한도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대출방법

○ 긴급경영안정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금융기관 대리대출

○ 수출금융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 지원규모

○ 지원예산 : 2,500억원, 지원기업 : 830개사 내외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p.11–p.12)

1-6 사업전환지원자금

업력 3년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GDP 증진 및 일자리 창출효과 달성

■ 지원대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품목)	전환 진출업종(품목)	비 고
모든 업종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융자제한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관련 세부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참조

■ 지원범위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이 해당하며, 업체당 1회로 제한), 임차보증금 등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 소요경비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분기별로 연동)

* 2010년 3/4분기 기준 3.71%이며,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30억원 이내(운전자금 5억원 포함)

○ 대출기간 : 시설 8년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운전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대출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금융기관 대리대출

■ 지원규모

○ 지원예산 : 1,475억원, 지원기업 : 250개사 내외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p.11~p.12)

1-7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등을 유동화하여 중소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평가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인 중소기업

지원범위

○ 설비투자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발행당시 시장금리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 대출기간 : 3~5년
○ 대출한도 : 발행시 신용등급별 한도 지정

대출방법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무보증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증권[6](ABS)을 발행하여 중진공이 후순위 채권을 인수

지원규모

○ 200억원(별도 공고에 따라 사업개시)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사업처 02-769-6884~5

6) 흔히 ABS(Asset-Backed Securities)라고 하며,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의미함

2 기업은행

2-1 혁신형 기업대출

혁신형 기업 관련 4개의 여신상품[7]을 한 개의 상품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한 것으로 R&D자금 지원을 함으로써 시장확대 및 보증협약을 통한 기업 건전성 제고를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부 R&D과제 성공기업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우수기업으로 추천받은 기업
- '기술혁신 중소기업 범위(부록 6)'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R&D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약'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범위

- R&D 개발자금 및 운전자금 : 중소기업자금대출(수시로대출 제외)
- 시설자금 :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지원조건

- 대출금리
  - 기간별 시장금리 + 신용위험비용 등 부대비용 - 감면금리
    * 이익률의 경우 본부에서 정한 이익률에서 0.3%p 차감된 이익률을 적용하고, 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2010년말까지는 목표이익률에서 1.0%p 차감된 이익률 적용(차감 후 목표이익률이 음수인 경우에는 0%p를 적용)

- 대출한도
  - 운전자금 : 동일인당 1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동일인당 30억원 이내

- 우대혜택
  - 아래의 기술평가기관이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요약 R&D평가서', '요약 기술평가서' 또는 '기술평가인증서' 상의 기술평가등급이 BB등급 이상인 경우 여신취급수수료를 50% 이내에서 감면 가능
    * 기술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 소요운전자금 산정 특례

7) 위너스론(기술혁신기업 지원), 메인비즈론(경영혁신기업 지원), 기술보증위너스론(R&D성공기업 지원), 기술개발자금(기술개발 및 사업화)

· 대출금 용도가 R&D 자금이고 90% 이상 보증서담보 대출로 취급할 경우 소요운전자금 산정 대상 외 여신으로 운영

– 소요시설자금에 대한 여신비율 확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시설자금대출 취급시에는 소요시설자금에 대한 여신비율을 90% 범위 내로 운용

①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②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

○ 기타

– '위너스론', '메인비즈론', '기술보증위너스론' 관련 협약에 의해 보증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혁신형 기업대출」로 취급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 최종 3년간 재무제표
○ 금융거래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 최근 3개월 급여통장
○ 퇴직금산정 내역서
○ 시설자금인 경우 건축허가서, 공사도급계약서, 물품공급매매계약서 등

문의처

기업은행 상담전화 1566-2566(해외 82-31-888-8000)

2-2 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IT분야 연구개발 경쟁력 향상을 위해 IT기업에 장기·저리의 기술개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 IT 및 IT기반 융합분야 기술개발 기업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융자 추천을 받은 기업

○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

– 광대역정보통신망의 신·증설 및 고도화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추천을 받은 기업

지원범위

○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 정보통신진흥기금대출(운전자금)

○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 : 기타재정시설자금대출(시설자금)

지원조건

지원사업	자금 용도	융자한도 (융자비율)	대출기간 (거치/상환)	차입 금리	대출 금리
응용기술개발지원	운전	업체당 20억원 이내 (소요자금의 80%, 대기업은 50%)	5년 (2/3)	2.83%	3.83%
90%기술신용 보증서 담보부	운전		5년 (2/3)	3.08%	3.83%
95%기술신용 보증서 담보부			5년 (2/3)	3.08%	3.83%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시설	소요자금의 80%	5년 (2/3)	3.83%	4.83%

* 대출금리(차입금리)는 2010년 1월 1일 현재 금리이며, 금리변동은 진흥원에서 금리변경 통보시 별도문서에 의해 시행

지원절차

○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 일반담보

융자상담	▶	평가 및 선정	▶	자금대출
은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은행

– 기술담보

접수, 평가, 추천	▶	선정	▶	보증서 발급	▶	자금대출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은행

○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

융자상담	▶	평가 및 선정	▶	자금대출
은행		한국정보화진흥원		은행

신청서류

○ 일반담보대출 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과제수행 계획서	o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기재하여 원본 1부 제출	융자추천의뢰서 지점장 날인
재무제표	o 최근 결산년도(1개년) 재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1부 제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나기업제시 재무제표를 접수
법인등기부 등본	o 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발급일자가 접수일 이전 1개월 이내일 것 (1부 제출) o 본사, 사업장 이전 등으로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동 폐쇄등기부등본도 제출 ※ 등기부등본(전산) 발급시 말소된 이력부분 포함하여 발급	관할 지방법원등기과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 (폐쇄등기부등본은 폐쇄당시의 등기과 또는 등기소)

주) 업체가 직접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전산등록으로 접수번호 채번 ⇒ 대출취급은행과 융자상담 후 융자추천의뢰서를 취급은행 지점장 날인 ⇒ 일체 서류를 추천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송부

○ 기술담보대출 서류 : 부록 7 참조

문의처

기업은행 상담전화 1566-2566(해외 82-31-888-8000)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금관리단 투융자사업팀 : 042-710-1471, http://www.nipa.kr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 한국정보화진흥원 융합서비스부 : 02-2131-0291, http://www.nia.or.kr

3 한국산업은행

3-1 기술력평가대출

연구개발능력 및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우수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금융애로를 완화시켜 주는 사업

지원대상

○ 창업이후 3년 경과 및 직전년도 연간 매출실적이 10억원 이상 업체로서 기술력평가결과 TBa 이상을 획득한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범위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단기운영자금 제외)

지원조건

○ 대출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 기간 등에 따라 다름

○ 대출한도
- 승인건별 : 시설자금 50억원, 운영자금 20억원
- 업체별(잔액 기준) : 100억원

○ 특기사항
- 계획시설이나 담보력이 없는 경우 신용취급 가능

지원절차

대출상담 및 기술력평가 의뢰	대출상담: 영업점 & 기업체 기술력평가 의뢰: 영업점 → 산은기술평가원
↓	
기술력평가 실시	산은기술평가원이 영업점 앞 평가결과 통보
↓	
지원여부 및 금액결정	필요시 KDB컨설팅 앞 사업성 검토 실시
↓	
대출약정계약 체결	영업점 & 기업체
↓	
자금지원	영업점 → 기업체

주) 1. 산은기술평가원의 기술력평가는 약 1주 소요되며 평가수수료는 없음
2. 기술력평가는 산은기술평가원에서 실시하며 타 평가기관의 "기술력평가보고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문의처

한국산업은행 고객상담실 1588-1500
홈페이지 : http://www.kdb.co.kr

3-2 기술가치평가대출

연구개발능력 및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특허권을 담보로 평가금액까지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우수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금융애로를 완화시켜 주는 사업

지원대상

○ 창업이후 3년 경과 및 직전년도 연간 매출실적이 10억원 이상 업체로서 특허권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
-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

지원범위

○ 기술가치 평가금액 이내 운영자금대출(단기운영자금 제외)

지원조건

○ 대출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 기간 등에 따라 다름

○ 대출한도
- 승인건별 :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최대 20억원)
- 업체별(잔액 기준) : 50억원

○ 특기사항
- 특허권 담보 제공
- 특허권 가치를 감안하여 △1.5% 이내에서 금리우대 가능

지원절차

대출상담 및 기술력평가 의뢰	대출상담 : 영업점 & 기업체 기술력평가 의뢰 : 영업점 → 산은기술평가원
↓	
평가의뢰 접수 및 실시	영업점의 기술력평가 의뢰 접수 (약 3영업일 소요) ・기술력평가등급 TBa 이상 : 기술가치평가 실시 ・기술력평가등급 TBa 미만 : 취급거절
↓	
용역수수료 입금	기업체 → 산은기술평가원(200만원/건)
↓	
기술가치 평가	영업점 앞 평가결과 통보(소요기간 약 3주)
↓	
지원여부 및 금액결정	영업점
↓	
대출약정계약 체결	영업점 & 기업체
↓	
자금지원	영업점 → 기업체

주) 1. 특허권리분석 등 외부용역을 위해 기업체가 부담하는 용역수수료는 기술력평가후 기술력 평가등급이 TBa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 통보 계좌에 기업체 명의로 입금함

2. 특허권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는 산은기술평가원에서 실시하며 타 평가기관의 "기술가치평가 보고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3. 가치평가대상 기술 : 개발완료되어 사업화가 가능한 핵심기술로서 특허 등록 완료된 기술(출원중인 기술 제외)

문의처

한국산업은행 고객상담실 1588-1500
홈페이지 : http://www.kdb.co.kr

3-3 KDB 기술거래금융

기술사업화 능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거래중개부터 사업화컨설팅과 자금지원을 One-Stop으로 실행하여 우수기술의 산업화 촉진

지원대상

○ 창업이후 3년이 경과하고 및 직전년도 연간매출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기술력평가 결과 TBa 이상을 획득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 정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및 공공연구기관·대학 기술이전 조직의 기술중개를 통한 거래기술의

사업화

- 기업간에 거래된 기술의 사업화
- 정부보유 기술 및 정부 기술개발과제의 사업화 등

지원범위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단기운영자금 제외)

지원조건

○ 대출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 기간 등에 따라 다름

○ 대출한도

- 승인건별 : 시설자금 50억원, 운전자금 : 20억원
- 업체별(잔액 기준) : 100억원

○ 특기사항

- 계획시설이나 담보력이 없는 경우 신용취급 가능

지원절차

지원대상업체 확인 및 개략검토	대출상담 : 영업점 & 기업체
↓	
기술거래금융 기술력평가의뢰	기술거래금융 기술력평가의뢰 영업점 → 산은기술평가원
↓	
기술거래금융 기술력평가	산은기술평가원이 영업점 앞 평가결과 통보
↓	
지원여부 및 금액결정	영업점
↓	
대출약정계약 체결	영업점 & 기업체
↓	
자금지원	영업점 → 기업체

주) 1. 산은기술평가원의 기술사업화컨설팅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
2. 산은기술평가원 : 한국산업은행 기술평가 전문부서

문의처

한국산업은행 고객상담실 1588-1500
홈페이지 : http://www.kdb.co.kr

3-4 KDB 스타터스-론(Starters-loan)

창업초기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한 초기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매출기반을 갖춘 이후 이자상환을 점진적으로 높이도록 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

지원대상

○ 한국산업은행 신용등급 BB^{-} 이상의 창업 후 7년 이내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범위

○ 산업시설자금대출

지원조건

○ 기준금리 : 산업금융채권[8](6개월) 변동금리

○ 분할기표
- 2년 이내에 한하며, 분할기표 건별로 만기 5년 적용

○ 대출기간 : 5년

○ 대출한도 : 50억원 이내

○ 상환방법
- 원금 : 만기일시상환
- 이자 : 매월 후취

○ 기한전상환 : 기한전상환수수료 면제
* 단, '대출기간 1' 동안 징수하지 않은 정상 Spread 수취

○ 금리조건
- 대출기간을 3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기준금리에 Spread[9]가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차등금리를 적용하며 다음 2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가능
- 기간3의 α : 정상Sp(기간3) + 정상Sp(기간1)의 미래가치

8)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하여 국가 주요 산업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특수채임
9) 채권이나 대출금리를 정할 때 신용도에 따라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가중금리

(Type 1)

	기간 1	기간 2	기간 3
적용기간	2년	2년	1년
적용금리	기준금리	기준금리 + 정상Sp	기준금리 + α

(Type 2)

	기간 1	기간 2	기간 3
적용기간	2년	1년	2년
적용금리	기준금리	기준금리 + 정상Sp	기준금리 +α

문의처

한국산업은행 고객상담실 1588-1500
홈페이지 : http://www.kdb.co.kr

3-5 기술혁신기업 및 경영혁신기업 우대대출

기술경쟁력,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기업의 기술· 경영혁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지원대상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15조에 의거하여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업

○ 경영혁신형(Main-Biz)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15조의 2에 의거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기업

지원범위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조건

○ 일반자금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지원대상만 구분

우대내역

○ 중소기업 우대운영자금(성장기업) 지원대상
○ 통화전환수수료(0.15%) 면제
○ 자유자재금리전환대출 수수료(0.05%) 면제

문의처

한국산업은행 고객상담실 1588-1500
홈페이지 : http://www.kdb.co.kr

3-6 혁신형 중소기업 전용 채권 인수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고수익 채권시장 조성에 기여

지원대상

○ 기술 및 사업성이 양호한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요건
▸ 공모채 발행요건 충족기업 – 자본금 5억원 이상 – 상법상(제 470조) 사채발행한도(순자산액의 4배 이내)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본건 포함) 등
▸ 발행채권에 대한 신용평가사(2개상 이상)의 신용평가(Issue Rating) 등급이 BB^{-}, BB°, BB^{+}인 기업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시장금리에 연동

○ 채권만기 : 3년 이내

○ 인수한도
– 업체당 50억원(최소 발행액 30억원)
– 액면발행원칙

지원방법

○ 원화공모회사채인수(계정과목 : 기타원화투자회사채)

사채 인수절차

① 소관부점이 대상기업 발굴·선정(발행시장실과 공동선정 가능)

② 발행사는 신용평가 진행
③ 발행시장실은 발행사와 금리 등 채권 발행조건 협의·확정
④ 소관부점은 여신승인절차 진행
⑤ 발행사와 발행시장실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등 발행절차 진행
⑥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이후 발행사는 사채발행, 소관부점은 사채납입금 기표
⑦ 사채 발행 후 소관부점이 사후관리

문의처

한국산업은행 고객상담실 1588-1500
홈페이지 : http://www.kdb.co.kr

4 한국정책금융공사

4-1 간접대출(On-lending)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은행을 비롯한 중개금융기관에게 대출자금을 제공하고 중개금융기관이 일정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제도

■ 지원대상

※ 대출을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금융감독원 기업표준신용등급 15등급 중 6등급에서 11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일반적으로 BBB^{+}~B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회사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기업
-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시 동종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기업의 설립 후 경과연수 포함 가능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연간매출실적 10억원 이상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사치, 향락,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른 주된 사업)

○ 금융기관 기존 일반대출금 대환자금

○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해 신용유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대표자, 회사지분의 30% 이상 보유자 중 최대주주 포함)

■ 지원범위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공사 간접대출(On-lending)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담보 취득금지 원칙

지원조건

○ 대출금리

– 간접대출금리[1] + 스프레드[2]

1) 자금유형(시설, 운전)에 따라 채권기준금리 또는 CD기준금리와 연동하여 정책금융공사에서 시장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3월, 6월, 9월, 12월의 각 5일에 공사 홈페이지에 고시 또는 중개금융기관 앞 통지)

2) 정책금융공사가 정한 금리 상한 범위 내에서 대출은행이 결정하며 금리상한은 신용등급, 담보 및 대출기간을 감안하여 공사가 결정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1년~5년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지원절차

융자상담, 차입신청	거래은행 또는 가까운 은행 & 기업체
↓	
여신지원 검토	거래은행에서 대출 적격여부, 신용상태, 계획사업에 대한 예비검토
↓	
자금 한도확인	거래은행: 정책금융공사 앞 자금 한도확인 요청 공사: 대상여부 검토 후 한도확인내용을 거래은행 앞 통보
↓	
여신 심사	거래은행이 심사 및 승인여부 결정 · 통보
↓	
약정체결	거래은행과 융자약정 체결
↓	
대출금지급	거래은행이 대출시점에 공사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아 대출금을 해당 고객앞 지급

문의처

한국정책금융공사 기업금융부 02-6922-6875

4-2 신용위험분담

신용도가 다소 낮으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간접대출금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중개금융기관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신용위험을 분담하는 지원방식

지원대상

○ 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On-lending) 대상기업 중 회사 설립 후 3년이 경과하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실적 10억원 이상 200억원 이하인 기업

지원조건

○ 공사 신용위험분담 수수료율

(중개금융기관 대출스프레드-교육세율)×공사 신용위험분담비율×(1-중개금융기관 취급수수료율)

지원절차

융자상담, 차입신청	거래은행 또는 가까운 은행 & 기업체
↓	
여신지원 검토	거래은행에서 대출 적격여부, 신용상태, 계획사업에 대한 예비검토
↓	
자금 한도확인 및 신용위험분담 요청	거래은행이 정책금융공사 앞 자금 한도확인 요청시 간접대출금의 일정부분의 신용위험 분담요청
↓	
약식심사 및 신용위험분담 통보	정책금융공사 → 거래은행 앞 : 신용위험분담여부 통보
↓	
여신심사	거래은행이 자체적으로 심사진행, 승인여부 결정 및 통보
약정체결	거래은행과 융자약정 체결
대출금지급	거래은행이 대출시점에 공사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아 대출금을 해당 고객에게 지급

문의처

한국정책금융공사 기업금융부 02-6922-6875

4-3 간접투자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 금융기관 및 펀드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가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펀드운용사가 정해진 설립목적에 따라 개별기업에 투자하여 기업 자금조달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투자조합 등
- 시중은행(은행법), 국책은행(산은, 기은, 농협, 수협), 여신전문금융업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
-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지원방식

○ 블라인드 위탁운용방식
- 위탁운용사(공사가 출자할 투자조합 등을 위탁운용할 기관)별로 위탁운용한도를 설정하여 이를 위탁운용사 재량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방식

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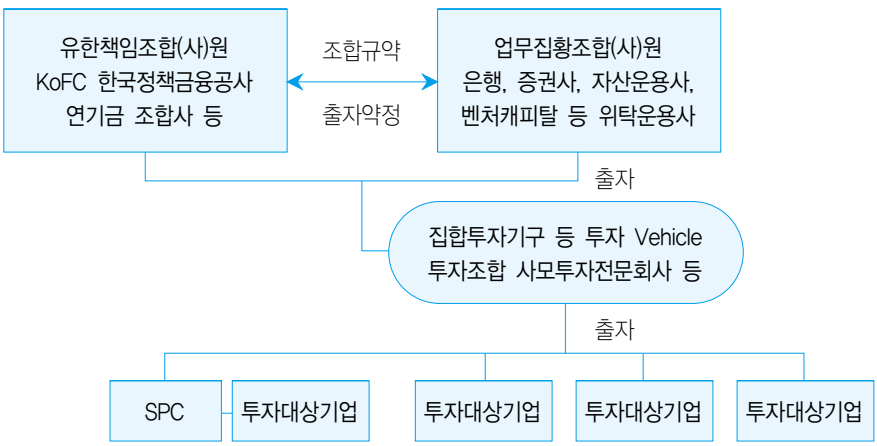

지원절차

○ 모집 공고 : 공사 홈페이지 등에 수시 공고

○ 위탁운용기관 선정
- 투자조합 등의 설립목적과 업무집행조합원(또는 업무집행사원)의 투자실적 및 투자자금 운용능력 등을 공사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위탁운용사로 선정
-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모집공고에 따름

○ 계약체결 및 투자조합 등의 결성

○ 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문의처

한국정책금융공사 투자금융부 02-6922-7505

03

투자금융

1 투자기관

1-1 창업투자회사

설립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관할기관

○ 중소기업청에 등록해야 함
  - 2009년말 기준으로 100개의 창업투자회사 등록

설립요건

○ 상법상 주식회사
○ 납입 자본금 50억원 이상
○ 전문인력 2인 이상

지원대상

○ 창업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투자재원

○ 조합
  - 흔히 '펀드'라고 알려져 있으며, 외부출자자, 모태펀드[10], 창업투자회사 내부 자금 등으로 구성

○ 본계정
  - 자본금을 비롯한 회사 내부자금

※ 창업투자회사의 주요 재원은 조합이며, 운용규모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도 조합투자의 규모가 훨씬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계정 투자의 경우 단독투자보다는 조합투자시 일부분 병행해서 들어가는 경우나 소액투자건인 경우가 대부분

사업내용

○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 해외기술의 알선, 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투자 등

10)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개별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Fund of Fund)

■ **투자이행 의무**

○ 3년내 50%

■ **자금운용**

○ 투자, 제한적 자금대여

1-2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설립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 **관할기관**

○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 **설립요건**

○ 2개 이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자본금 200억원 이상

○ 3개 이상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자본금 400억원 이상

■ **지원대상**

○ 기술신용보증법에 의한 신기술 사업자

■ **지급조달**

○ 정부 또는 기금관리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기금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출

○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의 양도

○ 신기술투자조합 결성

■ **사업내용**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및 경영·기술의 지도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과 조합 자금의 관리 및 운용

■ **투자이행 의무**

○ 법률상 이행의무는 없음

자금운용

○ 투자, 융자, 리스[11], 팩토링[12]

11) 기계, 설비, 기구 등을 임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임대를 의미함
12)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외상매출증서 등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2 투자유형

2-1 지분출자

개요

○ 벤처캐피탈의 가장 전형적인 투자방법으로 해당기업과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벤처캐피탈이 인수하는 형태의 투자를 의미함

제3자 배정방식

- 회사의 정관에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발행하고 이를 벤처캐피탈이 인수하는 형태
-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외자유치, 회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등의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회사의 경영권이나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엄격히 제한함

종류

○ 보통주

–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같은 재산적 이익을 받는데 있어서 특별한 권리내용이 없는 보통의 주식

–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주식이 '보통주'이며,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식수만큼 비례한 의결권을 갖게 되는 구조

–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타 투자방식에 비해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

○ 우선주

– 보통주 투자방식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 우선주 투자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 원리금 상환의 의무와 보통주로의 전환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흔히 '상환전환우선주'라고 함

– 이익잉여금의 한도만큼 조건에 따라 상환권이 부여되고, 일정계약조건에 따라 우선주에서 보통주로의 전환이 보장되는 주식으로 전환사채와 보통주의 중간적 성격

– 보통주에 비해 청산, 배당, 유상증자 등에 우선권리를 가짐

우선주 발행시 주의사항

- 정관에 발행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사회에서 신주발행결의시 발행조건을 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당시 제정된 정관에는 우선주의 발행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유치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2-2 주식연계채권

○ 주식연계채권 투자방식은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가 대표적이며, 실무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방식

○ 전환사채는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데 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상환 후 신주가 발행된다는 절차상의 차이가 존재함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

○ 사채권자에게 전환기간 내에 주어진 전환조건에 따라 당해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청구권)가 부여된 채권

○ 전환권 행사 이전에는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채로서 존재하고, 전환권 행사 이후에는 사채가 소멸되고 영업실적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으로 전환됨으로써 확정이자부채권임과 동시에 잠재적으로 주식으로서의 이중성을 지닌 유가증권임

○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발행되며, 사채의 일반적인 발행사항 외에 전환사채의 총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수 있는 기간 등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해야 함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s, BW)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사채와 비슷하지만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 벤처캐피탈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미리 정해진 기간내에 일정한 신주를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하여 줄 것을 청구하게 되면 발행회사는 신주를 발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됨

○ 벤처기업에게는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벤처캐피탈은 채권 외에 신주인수권을 추가하여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2-3 프로젝트 투자

○ 프로젝트 투자방식은 영화, 음반제작, 게임 등의 서비스산업이나 일부 제조업체의 신제품 출시 등에 주로 적용되며, 기업의 성장보다는 관심 아이템에 대한 단기투자가 목적인 경우가 많음

○ 수익배분 방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투자조건이 적용됨

- 투자 후 일정기간 안에 원금보장

- 원금보장 때까지 우선배분
- 매출 또는 정의된 이익의 일정 % 배분
- 투자 후 일정기간까지만 배분
- 투자수익의 한도까지만 배분

〈벤처캐피탈의 투자방식별 특징〉

구 분	보통주	우선주	주식연계채권	프로젝트투자
회계항목	자본	자본	부채	부채
이자/배당/ 잔여재산우선권	가장 후순위	최우선 (배당)	최우선 (이자/잔여재산)	매출 또는 이익의 배분
상환권 (중도상환)	없음	제한적으로 있음	있음	약정가능
전환권	–	보통주	보통주, 우선주	계약에 따라 가능
의결권	있음	부여 가능	없음	없음

3 투자절차 및 검토

투자절차

○ 벤처캐피탈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게 됨

투자검토[13]

○ 판단요소

- 투자결정은 수많은 요소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투자수익률에 의해 가부가 결정됨
- 투자수익률은 투자금 회수시점에서 기대되는 기업의 미래가치(상장 후 1주당 추정시가)와 현재의 투자가치(1주당 취득가격)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됨

〈투자수익률 결정요소〉

구 분	소분류		체크내용	
미래 가치	추정 재무 제표	손익 계산서	추정매출	시장분석, 제품분석, 마케팅전략
			비용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실현가능성	인력구성
		대차 대조표	자산	설비투자, 매출채권, 재고자산
			부채	매입채무, 차입금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현금 흐름표	자금 과부족 대책	
투자 가치	투자조건		총투자유치금액, 투자금액, 주당인수가격, 기타옵션	
	시장여건		주식시장 전망, 유사기업의 주가, 금리, 환율 등	

13)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R&D 지원시책 100% 활용하기, 2010. 5

○ 평가지표

– 투자결정시 주요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음

〈투자결정시 평가지표〉

구 분	평 가 내 용
경영자 (경영진)	경영진의 능력 및 경영능력, 책임과 권한 및 권한 위양 확립 여부, 회사내 인적구성, 조직의 효율성, 인센티브 제도 여부, 로열티, 내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
기술력	핵심기술 보유현황(특허 및 실용신안), 경쟁사 대비 보유기술의 우위성, 핵심 엔지니어 구성 현황 및 경력
주주구성	안정적인 대주주 지분 확보 현황 및 타 기관투자가 투자여부
시장성	산업의 특성 및 시장규모, 시장의 성장성, 경쟁환경 및 경쟁력, 경쟁제품 및 대체재
수익성	주요 매출처, 신규계약 추진 현황,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의 수익성, 구체적인 영업전략 및 영업의 지속성
재무분석	예상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 재고자산의 진부화 가능성,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장단기 차입금 과다여부, 담보자산 제공 등

4 투자유치 전략

유치목적

○ 기업은 투자유치 활동 시작에 앞서 기업 내부적으로 투자유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함
- 목적이 분명해야 조달금액과 방법, 조달처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목적이 결정되면 사용계획과 자금규모가 결정됨

○ 투자유치 목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사업 단계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유치시점

○ 무작정 투자를 유치하기 보다는 회사의 장기적인 계획과 자금사용 일정에 따라 적기에 자금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함
- 벤처캐피탈은 그들의 투자자금이 기업 내에서 최고의 효율로 사용되어진다고 기대되는 시점에 투자하기를 원함

○ 경제동향에 관심을 갖고 해당기업이 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판단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함
- 2008년말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경제위기가 대두되었을 당시 벤처캐피탈의 투자실적이 급감했으며, 당시 투자가 성사되었던 경우에도 수개월 전후에 비해 훨씬 낮은 기업가치로 투자가 이루어졌음

유치전략

○ 벤처캐피탈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전략 필요
- 최근 모태펀드(Fund of Fund) 출자금액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예산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정부정책지원 사업을 벤처캐피탈의 투자와 연계해서 매칭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확대되고 있음

○ 벤처캐피탈의 조합결정 동향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부록 8 참조)
- 조합결성금액이 많아지고 결성이 쉽게 이루어지는 분위기라면 벤처캐피탈의 투자여력이 늘어나고 투자유치 기회도 늘어나게 될 것임
- 조합들 중에는 일정 산업, 지역 등에 의무비율을 투자해야 하는 특수목적 조합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런 조합들은 기본적으로 수익성 외에 약간의 공익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산업분야에 소속된 기업들은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인 특수목적 펀드〉

- 지자체에서 출자받아 지자체 내의 기업에 의무투자비율이 있는 경우(보통 '도' 단위)
-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출자받아 해당분야에 투자의무비율이 있는 경우
- 문화관광부 출연기관으로부터 출자받아 해당분야에 투자의무비율이 있는 경우
- 모태펀드 특허계정으로부터 출자받아 해당분야에 투자의무비율이 있는 경우
- 모태펀드 중진계정에서 출자받아 창업 3년이내 기업에 투자의무비율이 있는 경우 등

○ 기업이 속한 업종 및 산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벤처캐피탈이 선호하는 산업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기업이 속한 산업의 현황과 이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평가와 전망, 투자선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투자유치를 계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투자유치 금액이 결정되는데 초기단계에서의 과도한 투자금액으로 벤처캐피탈의 지분율이 너무 높아진다면 향후 추가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생길 가능성이 높음
- 회사의 발전단계에 따라 2~3차례의 추가 투자를 고려한 투자유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은데, 보통은 IPO전까지 대표이사(대주주) 및 관계인의 지분이 50% 이하가 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음

■ 유치추진 시 주의사항

○ 투자유치를 원하는 기업들 가운데 80% 정도가 투자상담, 사업계획서 제출의 단계에서 투자거절 통보를 받게 되며, 이후 각 단계별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검토진행이 기각되어 최종 투자가 집행되는 비율은 1~2% 정도라고 알려져 있음

- 투자승인이 난 이후, 심지어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통장으로 투자금이 납입될 때까지 안심해서는 안됨

○ 기업의 입장에서 벤처캐피탈을 한 두 번 접촉한 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지만 투자결정을 재촉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함

- 결정을 재촉할 경우 벤처캐피탈의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 기각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회사의 사업적인 면보다는 실제로는 시간의 부족과 회사의 압박 등으로 검토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벤처캐피탈은 기업검토와 투자의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고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알아서 일정을 잡고 접촉을 시도함

  ⇒ 기업에서는 조르거나 압박하기 보다는 적절한 자신감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벤처캐피탈이 편안하게 검토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바람직함

○ 회사 소개 단계에서 너무 많은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기 보다는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 벤처투자 검토는 은행대출과 달리 서류검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검토가 진행되면서 벤처캐피탈에서 원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정도면 충분함
- 투자검토 중에는 등기부등록,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 일반적인 서류 이외에도 질문사항, 요청자료에 대해 수차례 서면 질의가 있게 됨

  ⇒ 질의에 대한 대응속도와 자료의 신뢰성은 검토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사업계획서 작성시 미리 준비하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함

○ 해당기업은 벤처캐피탈에게 투자원금의 회수와 수익 관점에서 투자매력이 높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국내 벤처캐피탈의 회수방법은 대부분 투자기업의 IPO를 통해서이며, 벤처캐피탈의 고민은 2~5년 뒤에 본인의 투자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을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됨
- 또한 벤처캐피탈은 그 속성상 드라마틱하고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호함
  - 과거 반도체 산업, 정보통신 산업, 인터넷 서비스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고, 최근에는 녹색성장과 관련있는 대체에너지, 에너지절약 분야로 투자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추세임
  - 이러한 기술과 산업의 공통점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초기 시장에서는 기술경쟁력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안정적 매출을 동시에 향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이러한 관점에서 벤처캐피탈의 입맛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노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실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일정액 배당을 하겠다든지 투자금에 일정 이자를 계산하여 상환하겠다고 하는 등 벤처캐피탈의 기대수익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작성된 경우가 많음
  - 벤처캐피탈은 은행과 같은 대출기관이 아닐뿐더러 벤처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며, 융자에 비해 투자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에 맞는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함

04

보증금융

1 기술보증기금

1-1 기술보증제도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심사하여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1) 개요

■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하는 기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사업을 하는 기업
-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 기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영위기업 중 기술사업평가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상시 종업원 수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 중점지원 대상기업

○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신기술 채택이나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파급하는 기업 또는 기술혁신 노력으로 기술혁신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기술혁신선도형기업의 범위(부록 9 참조)

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②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③ 다음 항목 영위기업 중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가. 지식경제부 등 선정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나. 지식경제부 선정 미래성장유망산업(6T)
다. 「지식서비스 산업 보증지원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혁신형 지식서비스 산업(부록 10 참조)"
라.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업종 영위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기술집약산업

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
사. 신성장동력기획단 발굴 '신성장동력' 관련산업
아. 지식경제부 발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산업
④ 기술인증을 획득하거나 기술관련상을 수상한 기업
⑤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기술력이 인정되는 기업

○ 기술창업기업 : 창업 후 5년 이내의 신기술 사업자

※ 기술보증을 받을 수 없는 기업

○ 보증금지기업

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② 제1항 기업의 과점주주, 무한책임사원, 실제 경영자가 영위하는 개인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③ 제1항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공동경영자, 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 대표이사
- 실제경영자
- 본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으로서 그 합이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보증제한기업

① 휴업중인 기업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대위변제(대지급 포함)·부도·관련인·금융질서문란자 및 공공정보(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정보 제외) 등록사유가 발생한 기업(신용관리정보대상자)

③ 제2항 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④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⑥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⑦ 금융부조리 관련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⑧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⑨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있는 법인기업 등

지원범위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내

○ 운전자금

– “운전자금(기술개발) 소요자금사정표”에 의한 소요자금과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보증금액사정

기술사업평가등급	사정한도액	기업평가등급	사정한도액
AAA, AA, A	소요자금의 100%	AAA, AA, A	소요자금의 90%
BBB, BB, B	소요자금의 90%	BBB, BB, B	소요자금의 80%
CCC 이하	소요자금의 80%	CCC 이하	소요자금의 70%

– 아래 보증에 대해서는 등급과 관계없이 사정한도액을 소요자금의 100% 로 운용 가능

· 무역금융, 수출자금관련대출, 발주서방식 Network Loan,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중소기업의 할인어음에 대한 보증, 협약체결 창업보육센터로부터 보증지원 추천을 받은 입주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조건

○ 보증비율

– 전액보증이 적용되는 보증

· 창업후 1년 이내 기업에 대한 보증

· Inno-Biz 협약보증

· 시설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전액해지조건의 경우)

– 보증비율을 95% 이내로 운용 가능한 보증

·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 기업은행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약보증

· 수출환어음매입, 수출환어음담보대출, 무역금융, 수출용원자재수입을 위한 수입신용장 발행에 대한 보증

·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 상생보증프로그램(무이자예치방식 제외)

– 기타비율 적용 보증

·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KIKO 손실기업) : 40%

·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KIKO 손실기업 이외의 기업) : 65~75%

○ 보증료

– 보증금액 × 결정된 보증료율

* 보증료율 산출체계

기술사업(기업) 평가등급별 보증료율 (0.8%~ 2.2%)	−	보증료율 감면*	+	보증료율 가산	=	결정 보증료율 (0.5% ~ 3.0))

* 보증료율 감면대상은 부록 11 참조

○ 보증한도

- 업체당 최고 30억원 이내
- 기업의 기술력, 신용도,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보증지원 가능금액 결정
- 일부자금의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보증가능
-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P-CBO[14] 등 보증의 유동화기초자산 편입금액 및 보증연계투자금액 포함)과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을 각각 포함하여 운용
- 최고한도초과 보증대상
  - 보증한도 50억원 대상보증
    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대출에 대한 보증
    나. 기술평가센터에서 평가한 기술가치평가금액에 대한 보증
    다.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라. 따로 기금이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 보증한도 70억원 대상보증
    가. 무역금융 및 중소기업의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자금관련대출에 대한 보증
    나.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신용장발행에 대한 보증
    다. 따로 기금이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담보보증
  - 보증한도 100억원 대상보증
    중소기업에 대한 주담보후취후 보증전액 또는 일부 해지조건의 시설자금보증. 다만, 일부해지조건의 경우 일부해지후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이 최고한도 30억원(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인 경우 50억원)이내인 경우에 한함
  -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아래 등급별 보증한도 초과 불가. 단, 신청건이 시설자금보증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해지 후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으로 적용가능

구분	기술사업평가등급	기업평가등급	보증한도
1	D	D	−
2	CCC, CC, C	CCC, CC, C	10억원
3	−	B	20억원
4	B	BB	30억원
5	BB	BBB	40억원
6	BBB	A	50억원
7	A	AAA, AA	60억원
8	AAA, AA	−	70억원

14)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이며, 신규발생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CBO를 Primary CBO(P-CBO)라고 함.

- 2010. 6.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음의 경우 최고한도초과보증대상으로 운용가능

구분	등급		보증한도
	기술사업평가등급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술기업	BBB등급 이상	BB등급 이상	100억원
수출중소기업*	BB등급 이상	B등급 이상	50억원
녹색성장산업영위기업**			100억원
벤처창업기업***			50억원
소기업 담보부대출 특별보증	–	–	70억원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70억원

* 수출중소기업 : 수출실적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 중소기업청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 단, 수출관련자금에 대한 보증은 최고 100억원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그린에너지산업 영위기업

*** 벤처창업기업 : 창업후 5년이내 벤처기업

지원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내의 사이버영업점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신청 가능)
▼		
예비검토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여타 필요서류는 신청기업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능력 등을 확인
▼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2) 기술보증 종류

종류	보증대상	보증상대기관
대출보증	–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금(할인어음, 당좌대출 등 포함) – 특별법 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기술개발자금(정보통신진흥기금 등) – 금융기관의 기술개발관련자금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조건부 융자 및 일반융자금	– 금융기관 •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아주IB투자(주), 산은캐피탈(주), (주)TG벤처
지급보증의 보증	무역어음인수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과 농·수·축협의 수입신용장 발행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수·축협
비은행 대출보증	비은행금융기관 또는 기타대출기관의 당좌대출, 상업어음할인, 어음할인 등을 포함한 각종 대출	농협, 수협, 축협,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업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신탁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회사채보증	기업이 부담하는 회사채 원리금	–
어음보증	지급어음, 받을어음, 담보어음	계열화수탁기업, 고정거래처
이행보증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업자 및 기타 대출기관, 공공법인 및 정부출자기관 – 위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출자·출연하거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상장·등록법인중 총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
사채인수 보증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상환기간이 2년 이상이고 발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며 발행방법이 비공모(사모발행)인 기명식 사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금융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신탁운용사

(3) 기술보증 주요 제도

▣ 무역금융보증

○ 개요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 등을 위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에 대하여 보증

○ 대상기업

– 30대 주채무계열기업군[15] 소속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15)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각 계열기업군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고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관리하고 있음

○ 보증한도

– 최고한도 초과대상보증으로 같은 기업당 70억원까지 보증지원

○ 보증금액사정한도 우대

– 소요자금의 100% 범위

* 2010.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같은 기업당 100억원까지 보증지원 및 보증금액 사정한도를 당기매출액 범위내로 우대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P(Documents against Payment) 방식에 의한 수출환어음 매입·담보부대출의 경우 당기매출액의 1/2

구매자금융보증

○ 개요

–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 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재토록 하는 구매자 금융방식으로 전환, 납품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

○ 대상채무

– 기업구매자금대출

· 납품기업이 발행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상의 판매대금의 결제를 위해 구매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농·수·축협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음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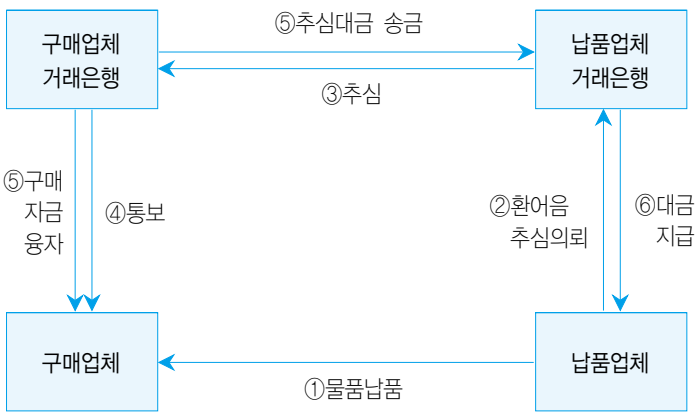

–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고, 동 결제자금을 금융기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농·수·축협 또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대출받음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구매기업이 결제기일에 상환할 자금을 대출받는데 따르는 금전채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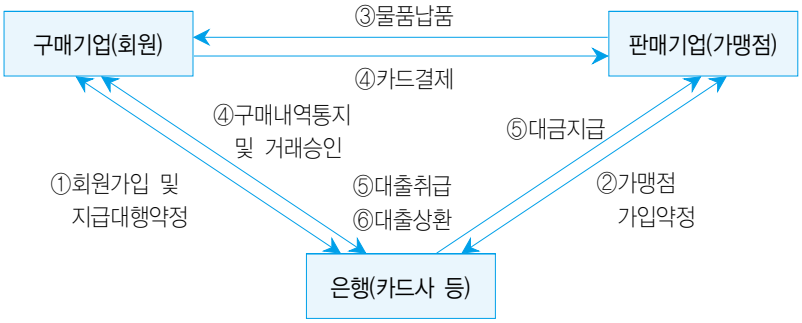

○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50억원

▣ 전자상거래보증

○ 개요

–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 대상기업

– 기술보증기금 또는 한국전자거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e-마켓플레이스[16]를 이용하여 물품 또는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

○ 대상채무

– 전자상거래대출보증

·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재화 등(이하 용역거래 포함)의 구매자금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이들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재화 등을 외상구매하는 경우, 판매기업에 대한 외상구매대금 지급채무

– 싸이클론(Cycle Loan) 협약보증(중소기업은행)

· 물품 등의 판매시에는 계약과 동시에 "판매자금(생산자금)"을,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금결제시에 "구매자금"을 지원

○ 보증한도 및 우대사항

구분	전자상거래 대출보증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비고
보증한도	최고 50억원	최고 70억원	기술집약형기업 해당시
보증료율	–0.2%		–
기타	벤처확인평가·이노비즈 선정평가 연계지원		기술성·사업성 우수 평가시

16) 포털 및 쇼핑몰과 연동하여 여러기업이 모여 다자간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커지는 쇼핑몰 중계서비스

■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 개요

– 창업유형에 따라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

○ 대상기업

– 창업후 5년 이내 기업으로서 아래 해당기업

* 녹색성장 창업 : 녹색성장산업(신성장동력산업, 그린에너지산업) 영위기업
  ① 신성장동력산업 : 에너지·환경, 수송시스템, New IT,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② 그린에너지산업 :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청정화, 효율성향상 업종
* 지식기반 창업 : 지식기반산업(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기업
  ① 지식기반 제조업 : 정밀화학,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통신기기, 신소재, 우주항공
  ② 지식기반 서비스업 :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문화산업
* 이공계 챌린저 창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이공계 고등학교·대학(원) 졸업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기업
* 1인 창조기업 :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지식·기술,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1인기업

○ 대상채무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 보증운용 및 우대사항

– 보증료율 최대 0.3% 감면
– 95% 부분보증으로 운용(창업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액 보증)
– 우대보증으로 지정
  · 신용도 유의기업에 대한 전결권 완화
–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한도 신설
  ·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향후 6개월 이내 신규 고용(예정)인원에 대해 1인당 2천만원을 특별한도로 추가 지원

■ 기업창업기업 특례보증

○ 대상기업 :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총 보증한도 7,000억원 이내에서 한도 소진시까지 운영

○ 기업당 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기금보증금액 5억원 이내

– 단, 창업 후 3년 이하인 경우 운전자금보증은 3억원 이내

○ 신청시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금액 우대

기술평가투자보증

○ 개요

– 벤처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우량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활성화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기업의 성공이익을 공유하는 제도

○ 대상기업 :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협약기관 추천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

○ 대상채무

–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인수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우수기술 보유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 업무협약기관 : 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기보캐피탈, 산은캐피탈,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벤처캐피탈, 현대기술투자, MOST5-2투자조합

○ 사채발행조건 등

– 상환기간 : 2년 이상

– 발행금액 : 5천만원 이상

– 발행방법 : 비공모발행(사모발행)

– 사채금리

· 표면금리 : [3년 만기 AAA무보증 회사채(공모) 금리] 이내

· 만기보장수익률 : [3년 만기 AAA무보증 회사채(공모) 금리 + Spread(3.0%)] 이내

– 보증비율 및 출연비율

보증비율	70%	50%	30%
출연비율	자본이득의 20%	자본이득의 10%	자본이득의 5%

벤처재기보증

○ 개요

– 벤처기업 경영인 중 비리 등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에 대해서 신규지원을 통해 재기가 가능하도록 패자부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 신청 및 지원대상

– 실패한 벤처 개인기업의 대표자, 벤처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벤처산업협회내의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의 도덕성 평가를 통과하고 벤처 재기지원에 관한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지원결정을 받은 자

– 신용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자로서,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

※ 신용 미회복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기술성·도덕성평가 통과 및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결정을 받을 경우 지원가능

- 신용보증기관의 채무관계자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9조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

○ 지원절차

절 차	비 고
벤처재기지원 신청·접수	벤처산업협회내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 사무국
↓	
사전심의, 기보 및 신용회복위원회에 명단(관련서류 포함) 통보	사무국 사전심의후 통과기업 명단 통보
↓	
기술평가·보증지원여부 결정	기보 기술평가센터
↓	
기보 보증지원 가능여부 통보	기보 ⇒ 사무국·신용회복위원회
↓	
도덕성평가 및 지원여부 최종 심의·의결 및 결과통보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 ⇒ 기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인
↓	
신용회복지원절차 회부	패자부활추진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지원 결정 통보	신용회복위원회 ⇒ 기보, 패자부활추진위원회
↓	
벤처재기보증실행	기보 기술평가센터

한도거래보증

○ 개요

- 1년에 1회의 기술평가를 통해 기업의 연간 자금계획을 감안하여 보증한도를 미리 설정해 놓고, 동 한도범위 내에서 한도거래기간 동안 보증신청이 있을 때 별도의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보증하는 제도
- 연간 이용가능한 보증한도를 미리 알 수 있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계획의 수립이 용이하고 자료제출의 번거로움과 연대보증의 자서날인 등을 1회로 끝낼 수 있어 금융활용 상의 불편요인이 크게 해소되고, 필요시 언제든지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 존재

○ 한도거래보증 대상기업

-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재무등급이 "CCC"등급 이상인 기업
- 기금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최종 대차대조표의 자기자본 전액잠식이 아닌 기업

○ 한도거래 대상보증

– 대출보증, 비은행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어음보증(담보어음에 한함), 상거래담보보증

○ 한도거래의 보증한도

– 한도거래기업의 설정한도액은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 및 연간자금계획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최고 30억원까지 운용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는 30억원을 초과하여 한도를 설정할 수 있음

대 상 보 증	보증한도
1. 무역금융 및 중소기업의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자금관련대출에 대한 보증 2.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신용장 발행에 대한 보증 3.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4.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5.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50억원

○ 한도거래기간

– 한도거래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우리기금의 "Kibo A^{+} Members"인 경우에는 2년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신규절차에 의하여 한도액 및 한도거래기간을 재설정하면 됨

■ 문화산업완성보증

○ 개요

–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후,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보증지원하는 제도

* 문화상품 :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방송, 게임

○ 대상기업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 대상채무

– 문화상품을 제작하기 위한 소요운전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통하는데 따르는 금전채무

○ 보증상대처 및 보증한도

– 완성보증계정 : 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5억원 이내

– EXIM 협약보증 : 수출입은행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30억원 이내(완성보증계정 포함)

1-2 기술평가제도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해당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금액, 등급, 평점,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

(1) 개요

평가대상

-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었거나 출원중인 권리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었거나 출원중인 권리
- 디자인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프로그램
- 기술력이 인정되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 신기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
  - 업무협약 등에 의하여 평가하기로 한 기술
  - 기타 영업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기술

평가종류

- 기술가치평가
  - 당해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평가결과는 금액으로 표시하며 세부평가종류는 다음과 같음
    -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제2항)
    -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4항)
    -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 기술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
    - 기술관련사업의 이전·양수도 등을 위한 평가
    - 기타 기술 또는 기술사업 관련 평가

- 기술사업타당성평가
  -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때에 당해 사업의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종류는 다음과 같음
    - 벤처기업 확인평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 Inno-Biz 협약에 의한 Inno-Biz 선정을 위한 평가(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발명의 사업성평가(발명진흥법 제28조)

· 정부, 지자체 또는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기술개발관련자금, 창업자금,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 금융기관 등의 여신심사용 기술평가
· 기술이전·거래 등을 위한 평가
· R&D 평가
· 보증지원을 위한 평가
· 기타 기술성·사업성 평가

○ 종합기술평가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세부평가종류는 다음과 같음
·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또는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용 평가
·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평가
· 주식가치평가
· 기타종합기술평가

기술평가료

○ 수납대상
– 기술평가 신청기업, 기술평가 의뢰기관

○ 수납시기
– 기술평가신청서 접수시 또는 평가종료 후

○ 기술평가료의 구분
– 정액평가료 : 예비평가료, 본평가료
– 계약평가료

○ 평가실비
– 국외 출장비 및 시험·연구분석 등의 의뢰에 따른 용역비

평가절차

신청·접수	– 기술을 보유한 자 – 업무협약 등에 의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	
예비평가	본평가에 앞서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 접수자료의 적정여부 – 특정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요건 여부 –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에 관한 개략사항
↓	
본평가	예비평가를 기초로 현장실사 및 보완조사 방법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현장(면담)실사〉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 기술개발실적 등 기술개발능력 확인 – 제품개발계획 및 진척도, 완성도 등 제품화능력 확인 – 생산설비 보유상황 및 가동상태 등 생산화능력 확인 〈보완조사〉 – 인쇄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자료 수집 – 거래처, 동업계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조회 – 대내외 각종 기술정보 및 산업동향정보의 조회
↓	
기술자문	– 기술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기술자문의뢰
↓	
평가심의	– 필요한 경우 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의결
↓	
평과결과통보	– 기술평가서 또는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인 등에게 통보

평가범위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평가항목)
경영주 기술능력 등	기술경영능력	기술경험(지식)수준
		관리능력
		경영진 인적구성 및 팀워크
기술성	연구개발능력	기술개발추진 능력
		기술·연구개발 투자현황
	기술(제품)의 우수성	기술혁신(선도)성
		기술완성도
		기술확장성
시장성	기술(제품)의 시장성	경쟁상황
		시장형성
		제품의 경쟁력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평가항목)
사업성 및 수익성	기술(제품)의 생산성	기술의 제품화능력 및 생산능력
	운용능력	운용능력
	기술(제품)의 영업능력	마케팅능력
	수익성	수익창출능력
		수익전망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2) 특허기술평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을 평가하는 제도

평가대상

○ 평가신청일 현재 특허법에 의해 등록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유지 결정된 권리

신청인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내국인에 한함(동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

평가종류

○ 사업성평가

– 특허기술 기술성평가기관의 기술성평가결과를 첨부하거나, 기술성평가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평가가능

기술평가료

○ 계약평가료로 운용

(3)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평가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제도

평가대상

○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신청 벤처기업 중

– 신청기업 및 주간사가 해당 기업의 기술력 및 사업성을 기술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받아 그

결과가 코스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기업
- 코스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기술력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기업

■ **기술평가료**

○ 건당 8백만원

(4) 여신심사용 기술평가인증

협약체결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술평가절차를 거쳐 기술평가인증서(평가등급, 소요자금, 부실화 가능성 등)를 제공하여 여신심사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제도

■ **대상기업**

○ 협약금융기관이 여신심사를 목적으로 기술평가를 의뢰한 기업

■ **보증지원**

○ 지원대상 : 기술평가결과 B등급 이상

○ 지원조건 : 보증비율 85%, 자금용도별 소요자금과 기술사업평가등급 및 기업평가등급에 의하여 적정금액 지원

■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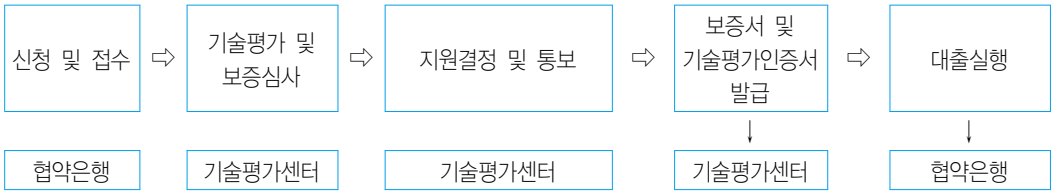

(5)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특허기술의 사업화 이전단계의 우수한 기술을 조기발굴하여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보증대상**

○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은 개인기업은 대표, 법인기업은 법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전용실시권자 포함)

보증조건

○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적용

○ 평가료

– 특허청의 기술평가수수료 지원결정시 5백만원까지 지원(업체부담금은 20만원)

○ 보증한도

–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기업당 10억원 한도

* 특허기술의 타기업 이전 방지를 위해 특허권을 담보로 취득(근질권)

○ 보증제한

– 특허청의 기술평가수수료 지원결정시 5백만원까지 지원(업체부담금은 20만원)

– 지원조건 : 보증비율 85%, 자금용도별 소요자금과 기술사업평가등급 및 기업평가등급에 의하여 적정금액 지원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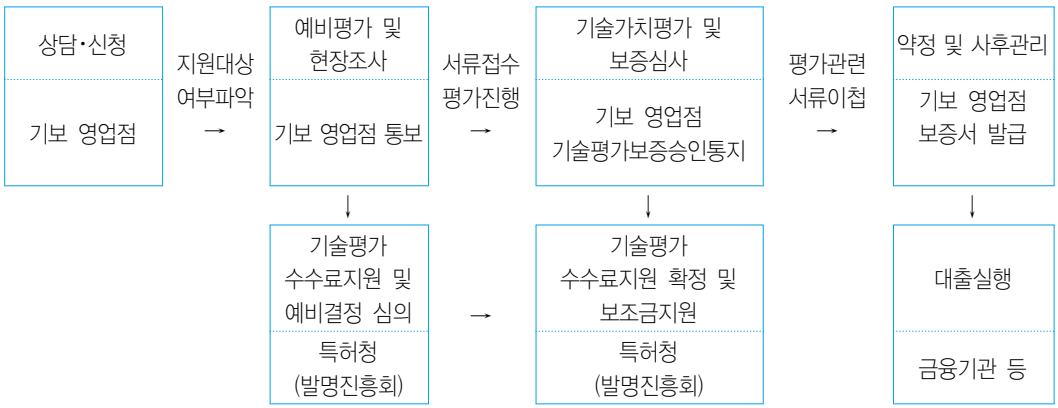

(6) 정부의 R&D과제 성공기업 특례보증

R&D 성공과제에 대한 보증연계지원을 통해 R&D 결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보증대상

○ 최근 3년 이내 정부 R&D과제 성공기업

– 확인방법 : 과제수행 확인서, 정부부처 홈페이지 등

–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성공한 경우에는 보증신청 기업이 산학연 컨소시엄에 참여하였고, 사업수행에 제약이 없다면 대상기업에 해당

지원범위

○ 성공과제의 사업화 및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

보증조건

○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적용

○ 우대내용
- 신용도 유의기업 검토 완화
- 소요자금 및 보증금액 사정 우대(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운용)
- 보증료 0.3% 감면
- 기술혁신선도형기업으로 지정
- 기업은행과의 협약에 의해 일반기업여신금리에서 최대 1.5% 우대적용

○ 보증한도 : 일반보증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제한
- 보증금지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보증제한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지원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영업점 방문 신청 가능)
▼		
예비검토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여타 필요서류는 신청기업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능력 등을 확인
▼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이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7) 혁신형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화자금을 대출하거나 정부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구 분	내 역
1.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2. 이노비즈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상의 「이노비즈기업」
3. 신기술인증기업	· 정부로부터 NEP, NET, 전력신기술, EE, GS, GR, GQ,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4. 특허·실용신안권 보유기업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
5. 연구개발기업	·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기업
6. 정부지원R&D성공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을 제외한 사업
7. 혁신형중소기업	· 금융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
8. 기술평가인증기업	·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 상기 제3호, 제4호, 제6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정부인증, 특허·실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 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 지원절차

○ 금융기관 사전상담→ 한국기술금융 홈페이지(www.tf.or.kr) 신청→ 예비검토→ 평가계약 체결→ 기술평가→ 여신심사→ 자금지원

■ 기술평가비용 지원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기술평가기관	기술평가비용	신청기업 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술보증기금	200만원	50만원	150만원
정책자금신용평가	100만원	20만원	80만원

※ 신청기업은 기술평가비용 전액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함

※ 신청기업 부담금은 기술평가기관별로 달리 운용 가능

○ 평가비용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
  –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 재지원 불가 원칙

■ 사업화자금 대출(국민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 금융기관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로 각종 신용대출(부분담보·보증 포함)을 지원

○ 금융기관별 대출상품은 기존대출상품 및 신규대출상품 포함 운용 가능
  ※ 기업별 대출여부, 대출상품, 규모, 조건 등은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정부정책자금 신청 대상기업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청대상 정책자금
  – 중소기업청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및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
  ※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배정여부 및 규모 등은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심사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상기 미대상기업 또는 지원 금융기관 외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인증에 의해 별도 신용대출 지원가능. 이 경우 평가비용을 전액 신청기업에서 부담

2 신용보증기금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보증하여 담보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성장 유망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2-1 신용보증

(1) 개요

보증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기업과 이들의 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 등)

○ 사행성·불건전 오락업종 및 부동산투기 조장 업종 등에 대하여는 보증제한업종으로 분류하여 보증을 제한

- 보증금지대상
  ① 신보, 기보, SOC기금, 지역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② 매출채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위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어음의 발행인 및 구매자
  ③ 위 ①기업의 대표자, 과점주주인 이사 및 실제경영자가 대표자로 있는 기업
- 보증제한대상
  ① 휴업중인 기업
  ② 은행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③ 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연체를 정리한 기업은 제외)
  ④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를 포함)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⑤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 받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⑥ 허위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⑦ 신보, 기보 및 SOC기금의 보증부실(사고)기업[부실(사고)처리 유보기업을 포함]
  ⑧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 받지 못한 기업의 과점주주인 이사 등이 실제경영자로 있는 기업

보증종류

구분	내용
대출보증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할인어음, 각종기술개발자금 등
제2금융보증	중소기업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농·수협, 중소기업진흥공단,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의 지급 보증 ■담보어음 보증 및 지급어음, 받을어음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하여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 등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상대기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상기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래 구상 채무 보증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사채보증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의하여 모집하는 사채가 대상채무
납세보증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세금
(전자)상거래담보보증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지원조건

○ 보증기간 : 3~5년

○ 보증한도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일반보증을 합하여 30억원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단,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한도 초과이용 가능
- 신용등급별 최고보증한도

종합신용등급	특례조치	최고보증한도
KA4등급 이상	KB1등급 이상	100억원
KB1등급~ KB2등급	KB2등급~ KB3등급	70억원
KB3등급~ KC2등급, R2, SB1~ SB3등급	KB4등급~ KC3등급	50억원
KC3등급 이하, R1, R3 F1, F2, 무등급, SB4등급 이하	KC4등급 이하	30억원

*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은 조건에 따라 100억원까지 가능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재단 보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 보증료

- 기업의 신용도에 상응하는 보증료 수납

신용등급별	0.5% ~ 2.5%

+

가 산 보증료율	• 보증비율 미충족 기업 : 0.2%p • 갱신·연장시 일부해지기준 미충족기업 : 0.1~0.4%p • 장기분할보증 기한전 갱신보증 기업 등 : 최대 0.4%p • 비효율부문기업 중 특별약정체결거부 및 보증해지계획미이행 기업 : 최대 0.4%p

—

차 감 보증료율 (2개 이상 해당 시 차감율이 큰 1개만 적용)	신보선정 우량기업	• Best-Partner 선정기업 : 0.2%p • 유망중소기업 : 0.2%p
	정책우대부문	• 혁신형 중소기업 : 0.1%p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0.2%p • KC2 등급이상 전자상거래보증 : 0.1%p • 시설자금보증(전액해지 조건) : 0.1%p • 시설자금보증(50%이상 해지 조건) : 0.1%p • 창업 5년내 여성기업 : 0.1%p • 장애인기업 : 0.3%p • 창업초기기업 : 0.1%p • 협약보증 중 차감대상운용보증 : 최대 0.3%p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 : 0.1%p
	기타 보증 프로그램	• 경쟁력향상 프로그램 기업 : 0.2%p 이내 • 창업지원 프로그램 추진대상 : 0.6%p 이내

±

보증료율 조 정	+0.2%p ~ -0.5%p

+

대 기 업	가산 : 0.5%p

보증료율 상·하한선	상 한	3.0% (대기업 3.5%)
	하 한	0.5%

지원절차

단계별	절 차
보증신청 및 상담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 보증신청 ■신규기업 : 영업점 방문상담, 기존 보증거래기업 : 전화상담(방문상담 생략)
↓	
자료수집 및 신용조사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수집된 자료 및 담당자 현장출장 등을 통해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종합신용등급 산출 ■최고 보증한도 및 운전자금 보증한도 검토 ■각종 검토표 충족여부 검토 ■영업점 승인 또는 본부 승인
↓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수납(신용카드 결제 가능)

* 보증심사시 신보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종합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보증금액에 따라 다양한 보조지표를 이용하여 기업실체를 종합판단

* 보증 신청기업이 설립일로부터 3년 미만일 경우 창업기업신용평가시스템 적용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고객상담실 1588-6565
홈페이지: http://www.kodit.co.kr

(2) 전자상거래보증

"비대면 거래"라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고 결제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보증대상

○ 중소기업

보증종류

○ 전자상거래대출보증 : 기업이 전자상거래 계약에 의한 대금지급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 계약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에 부담하는 외상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 **보증조건**

○ 최고보증한도 : 70억원

○ 보증한도
- 최근 1년 매출액의 1/2(담보용보증)
- 최근 1년 매출액의 1/3, 1/4, 1/6(대출보증, 제2금융보증)

○ 보증료 : 0.1p% 할인(KC2등급 이상)

■ **지원절차**

○ 보증 상담 신청→상담 및 보증접수→신용조사→보증심사 및 승인→보증서 발급

(3) 구매자금융보증

납품·하청대금 등의 결제를 위하여 기업이 어음발행 대신 구매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금전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제도

■ **보증대상**

○ 중소기업

■ **보증범위**

○ 기업구매자금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의 구매자금

○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고 동 결제자금을 금융기관(농,수협 포함) 및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 **보증조건**

○ 보증한도 : 최고 70억원

(4) 무역금융보증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증대와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조달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위한 보증제도

■ **보증대상**

○ 수출신용장 및 기타 수출관련 계약서에 의해 물품,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에 공급하고자 하는 기업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수탁가공 포함) 하고자 하는 기업

○ 기타 수출 또는 공급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동 수출실적을 기준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

■ **보증범위**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서 정한 무역금융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의한 원자재자금 금융중 수출신용장을 기준으로 취급하는 무역금융

■ **보증조건**

○ 보증한도 : 최고 70억원

○ 보증료 : 수출중소기업은 0.1%p 할인

(5)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미확정채권 포함)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양도)하고 받는 대출에 대하여 보증하여 공사계약일부터 공사대금 수령시까지 필요한 자금의 조기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보증대상**

○ 정부, 공공기관 등의 발주처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공사대금 관련채권(미래채권 포함)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영위기업

* 하도급 공사는 보증대상이 아니며, 발주처로부터 직접 수주받은 공사만 보증대상으로 함

■ **보증범위**

○ 대상기업이 “보증대상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미래채권 포함)을 담보로 받는 대출금 및 운전자금

* 보증대상 발주처 : ①정부, ②지방자치단체, 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간, ①-③이 출자, 출연하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보증조건**

○ 운용기한 : 2011. 4.30

○ 보증한도

- 최고보증 한도 : 같은 기업당 300억원
- 운전자금 한도 : 공사규모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금액 이내

(6) 시설자금보증

사업의 확장, 신설 등을 위해 사업용 공장, 고정적인 기업 설비의 취득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

■ **보증대상**

○ 사업장 신축, 분양 등 시설 및 설비를 준비중인 일반기업

■ **보증범위**

○ 기업이 토지, 건물, 사업용공장, 기계 등을 구입 및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금

■ **보증조건**

○ 보증비율

– 준공 또는 시설취득 후 보증 전액해지조건의 경우 100%까지 가능

○ 보증료

– 준공 또는 시설취득 후 보증 전액해지 : 0.1%p 할인

○ 보증기간 : 금융기관 시설자금 대출기간 이내

○ 보증한도 : 소요자금 범위내 (최고 100억원)

(7) 임차자금보증

사업장을 창업하여 최초로 임차하거나, 제2사업장 임차 또는 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추가로 임차하는 자금에 대해 보증하는 제도

■ **보증대상**

○ 제조업 및 유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보증범위**

○ 주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용 건물의 임차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함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금

■ **보증조건**

○ 보증비율 : 85% 고정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임차보증금 대비 연간환산 월세비중에 따른 보증한도

임차보증금 대비 연간환산 월세비중	보증한도
10% 이하	임차보증금의 80%
10% 초과 20% 이하	임차보증금의 70%
20% 초과 30% 이하	임차보증금의 60%

○ 보증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 이내(최장 5년)

(8) 태양광발전시설자금보증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신축을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을 지원

■ 보증대상

○ 태양광발전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자로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중소기업

■ 보증범위

○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신축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대출금

■ 보증조건

○ 보증한도 : 최고 70억원

(9)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특별출연금으로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며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부실위험 자산을 최소화하여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는 제도

■ 보증대상

○ 출연 금융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

■ 보증범위

○ 각종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신한, 국민, 농협은 시설자금 제외)

■ 보증조건

○ 운용기한

- 출연금 대비 협약보증 12배 공급시 또는 대위변제로 인해 출연금 소진시까지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30억원 이내(대구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은 5억원 이내)

*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하는 우대자금 및 우대기업에 해당 : 100억원 이내 운용가능

○ 우대사항

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
보증비율 100% 적용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0.2% 차감 적용	대출절차 간소화

■ 금융기관별 출연 및 보증공급액

(단위 : 억원)

구분		최대출연금	최대보증공급액
별도출연	신한은행	1,000(25)	12,000
	기업은행	700	8,400
금융기관합동협약	기업은행	700(70)	8,400
	우리은행	700(70)	8,400
	하나은행	600(60)	7,200
	국민은행	500(70)	6,000
	외환은행	400(40)	4,800
	농협중앙회	200(15)	2,400
지방은행	대구은행	50	600
	광주은행	50	600
	경남은행	50	600
	부산은행	20	240
	전북은행	10	120
	제주은행	5	60
합계		4,985	59,820

* ( )안은 소상공인 전용 협약보증으로 운용

(10) 소상공인 전용 협약보증

특별출연금을 통한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확충으로 보증지원 여력을 증가시키고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부실위험 자산 최소화로, 금융기관의 BIS 비율을 제고시키며 상대적으로 금융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시키는 제도

■ 보증대상

○ 출연 금융기관이 각각 추천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소상공인 범위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보증범위

○ 각종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조건

○ 보증만기 : 5년 이내(만기 이후 연장 및 갱신 가능)
○ 운용기한 : 특별출연금 운용배수에 의한 총량한도 소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해 특별출연금 소진시까지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 우대사항

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
보증비율 100% 적용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0.2% 차감 적용	대출절차 간소화

금융기관별 특별출연금

(단위 : 억원)

구분	특별출연금	최대보증공급액
국민은행	70	840
기업은행	70	840
우리은행	70	840
하나은행	60	720
외환은행	40	480
신한은행	25	300
농협중앙회	15	180
합계	350	4,200

2-2 보증연계투자

비상장 우량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과 직접투자를 연계한 복합상품으로서, 신용보증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기업이나 이미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직접 투자(주식, 사채)를 신청할 경우 신용도, 사업성, 기술력 등이 우수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제도

투자대상

○ 사업성이 우수하여 투자수익이 예상되는 법인설립후 5년이내의 혁신선도형 기업*으로서 투자부적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상장중소기업

혁신선도형 기업

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관련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기업
②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중소기업청 선정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④ 외국 기술·자본 투자기업(주식지분 20% 또는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으로서 신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가 예상되는 기업
⑤ 「부품·소재 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부품·소재 전문기업
⑥ 신용보증기금 선정 Best-Partner 기업
⑦ 차세대성장산업(6T) 영위기업
⑧ 기타 고도의 첨단기술력, 고부가가치성,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보증사업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기업

○ 투자 부적격 기업의 범위

①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기업
② 기 투자된 원금, 이자 또는 배당금의 납부를 연체하고 있는 기업 등 신보가 정한 '투자금지대상' 기업
③ 신보의 CCRS등급이 KC3 이하인 기업
④ 신보의 『기업가치에 의한 여유신용공여한도금액』이 투자(예정)금액 미만인 기업
⑤ 신보의 현금흐름표 종합판정등급이 CR-4 이하인 기업
⑥ 최근 1년이내 기업신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⑦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해당기업,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⑧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최대주주인 기업

* 단, 혁신선도형기업에 대한 10억원 이내의 투자는 상기 3 ~ 5 에 해당하더라도 경영능력, 기술력 및 성장가능성 등이 우수할 경우 보증사업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투자 가능

투자종류

○ 주식(우선주, 보통주)
○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투자조건

○ 투자기간

- 주식 : 3 ~ 10년
- 사채 : 2 ~ 5년(가급적 5년이내 운용)

○ 투자한도

- 투자한도(주식+사채) : 50억원
- 통합한도(투자+보증) : 100억원

* 종합신용등급에 따라 투자한도 차등 적용

투자절차

업체선정	• 영업점 추천 및 본부 자체 발굴
사전검토 및 신청접수	• 본 부 :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사전검토 ▹ 소요자금 규모, 재무구조 및 보증현황 고려하여 지원 규모 검토 • 영업점 : '보증연계투자신청서'에 의해 신청접수
투자조사 및 심사	• 본 부 : 재무상태, 사업전망, 기술성 등 파악 ▹ 기업실사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 활용 등 • 영업점 : 보증을 위한 기업실사 및 심사
지 원 결 정	• 본 부 : 보증사업심사위원회에서 투자지원 결정 • 영업점 : 보증승인에 관한 전결규정에 따라 보증지원 결정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고객상담실 : 1588-6565
홈페이지 : http://www.kodit.co.kr

2-3 유동화회사보증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줌으로써 직접금융시장에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중소기업	■CPA 감사보고서 보유 : 신보의 신용등급(CCRS) KC3(B+) 이상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의 신용등급(CCRS) KC2(BB-) 이상
중견기업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 ( )안은 회사채등급, 회사채등급이 있는 중소기업은 회사채등급 적용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선정하는 30대 주채무계열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제한대상

채무불이행 위험기업 및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	■보증금지, 보증제한, 보증부실사유 발생기업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기업 ■당기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신용등급 BB+(CCRS등급 KB4) 이하로 이자보상배율이 최근 2년 연속 1.0 미만인 기업
경영권이 불안정한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회생절차, 워크아웃 졸업 후 2년 미경과 기업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최대주주인 기업
지원타당성이 낮은 업종 및 기업	■금융업 영위 기업 ■신보의 차환 유동화회사 보증 편입잔액이 있는 기업
도덕적해이 등이 발생한 기업	■보증사업심사위원회가 판단하여 편입 제외한 기업

지원조건

○ 발행금리

–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대비 발행금리 우대 적용

- 중소기업 : 신용등급별로 5.3%(KA1등급 이상) ~ 7.3%(KC3등급) 수준
- 중견기업 : 신용등급별로 6%(BBB+등급 이상) ~ 9%(BB-등급) 수준

* 상기 금리수준은 2010.4.21일자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시가평가수익률 기준으로 발행 시점의 시가평가수익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후순위채 연율 1 ~ 2% 범위 내에서 별도 인수(단, 중소기업은 0.5 ~ 1.0% 수준 예상)

* 대표이사(전문경영인 제외) 또는 실제경영자 중 1인 이상 연대보증

단, 유가증권시장 상장 중견기업 중 회사채등급 BB+등급 이상, 중견기업 중 BBB-등급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연대입보 생략 가능

○ 지원한도

– 신용등급별 한도

구 분	BBB이상 (KB2이상)	BBB- (KB3)	BB+ (KB4)	BB (KC1)	BB- (KC2)	B+~B (KC3~KC4)
중견기업	500억원	400억원	300억원	200억원	100억원	70억원
중소기업	300억원	200억원	150억원	100억원	70억원	50억원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일반보증 + 보증재단보증 + 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 +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 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매출액, 자기자본, 차입금 및 상법상 사채발행 한도

매출액 한도	■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 당기매출액의 1/3 이내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이내 ■ 기타 업종 : 당기매출액의 1/4 이내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이내
자기자본 한도	■ 신보 CCRS등급 KC3이하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4배 이내
차입금 한도	■ 이번 편입금액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범위 이내
상법상 사채발행한도	■ 총 사채발행 잔액이 순자산액의 4배 이내

* 매출액 및 자기자본한도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이행보증은 이행지급보증만 포함), 투자금액,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을 포함

지원절차

구 분	상담·신청	조사·심사	편입심사	보증승인
중소기업(주)	영업점	CCRS등급 (표준심사)	본 점 (보증심사부)	보증사업 심사위원회
중견기업	주관회사	회사채등급 (신용평가회사 평가서)		

(주) 신용평가회사의 유효한 회사채 평가등급 보유 기업 및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기업은 주관회사에서 신청절차 담당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고객상담실 : 1588-6565
홈페이지 : http://www.kodit.co.kr

2-4 신용보험

기업간 상거래에 있어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으로 공급하는 채권자(보험계약자)가 채무자(구매자)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손해 발생의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손해보험제도

(1) 매출채권보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후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구매기업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가입대상

보험계약자 요 건	▸ 규 모 : 연간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업 종 :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 영업실적 : 최근 결산일 현재 영업실적 2년 이상 단, 소기업포괄근보험, 개별근보험, 개별보험은 1년 이상
구매기업 요 건	▸ 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 정부 및 지자체, 정부출자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이행지체중인 기업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가능
보험대상 매출채권	▸ 물품의 판매자(보험계약자)가 구매자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보상범위

○ 근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별 보험금액과 실제 손해금액의 80% (보상률) 중 적은 금액을 보상

○ 개별보험의 경우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금액에 보험인수비율(최고 80%)을 곱한 금액(보험금액)을 보상

■ 가입조건

○ 보험료

– 포괄근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매출채권에 대하여 연율 0.1%부터 5%까지 차등화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

* 보험료율은 보험계약자의 매출채권 관리능력, 보험가입대상 구매기업의 신용도, 거래비율, 결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개별근보험과 개별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구매자와의 보험가입매출채권 또는 보험금액에 대하여 구매자의 신용도, 결제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최저보험료 : 다음 금액 중 큰 금액

① 총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근보험 10만원, 개별보험 5만원

○ 보험기간

– 근 보 험 :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

– 개별보험 : 매출채권의 결제기일까지

○ 보험가입한도

–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한도

· 보험에 가입된 각 구매자별로 부여되는 보험금액을 합하여 최고 20억원(어음보험 가입금액 포함)

– 보험계약자의 구매자별 보험금액(최고 보상한도)

· 구매기업의 신용도, 거래규모, 평균결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보험사고사유

– 구매자에게 지급불능 사유 발생

·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 폐업 또는 해산등기,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 구매자의 채무불이행

· 근 보 험 : 보험에 가입된 외상매출금이 발생일 익월 첫날부터 시작하여 평균결제기간 경과 후 2월 이내에 결제되지 아니한 때 또는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 중 타수어음[17]이 부도 후 2월 이내에 결제되지 아니한 때

· 개별보험 : 보험대상매출채권이 보험기간 이내에 결제되지 아니한 때

17) 거래처가 직접 발행한 어음이 아니고, 거래처의 고객이 발행한 어음으로 거래처가 배서한 어음을 말함

이용절차

단계별	주요업무내용
보험상담·청약접수	■보험가입 가능 여부 및 가입방법 등 상담 ■보험가입 청약서 접수
↓	
신용조사	■구매기업 및 보험청약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	
인수심사	■보험가입대상 구매기업 확정 및 보험금액 산출
↓	
증권발급	■보험료 납부(일시납 또는 분납) ■보험증권 수령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고객상담실 : 1588-6565
홈페이지 : http://www.kodit.co.kr

(2) 어음보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어음이 부도 처리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가입대상

보험계약자 요 건	■ 규 모 : 중소기업 ■ 업 종 :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 영업실적 : 보험청약서 접수일 현재 영업실적 1년 이상 (제조관련 도매업의 경우 2년 이상)
어음발행인 요 건	■ 당좌거래실적이 1년 이상인 기업(어음배서인은 제외) ■ 신청기업(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이 아닌 기업
보험대상 어 음	■ 물품의 구매자가 발행 또는 배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을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에 의해 발행된 은행도 약속어음 ○ 어음법 제75조에 의한 약속어음 요건을 구비한 어음 ○ 보험인수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50일 이내인 어음 다만, 어음발행인이 대기업인 경우에는 120일 이내인 어음 ○ 보험청약서 접수일로부터 만기까지의 일수가 30일 이상인 어음 ○ 배서어음의 경우 제1배서만 있는 어음

▣ 가입조건

○ 보험료율

- 보험금액에 대하여 최저 0.5% ~ 최고 5%
- 최저보험료 : 5만원

  * 보험료율은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과 어음의 지급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보험기간

-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증권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5일이 되는 날(책임유예기간)의 다음 거래일부터 어음만기일에 이은 2거래일까지
- 책임유예기간 중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가입한도

- 신청기업(보험계약자) 가입한도 : 아래 ①, ②, ③, ④중 적은 금액
  ① 10억원(최고한도)
  ② 연간 매출액×1/3×70%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70%
  ③ 신청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른 한도
  ④ 20억원 - 매출채권보험계약총액
- 신청기업의 어음발행인별 한도
  · 같은 보험신청기업이 같은 어음발행인에 대해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3억원 이내에서 어음발행인의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 보험인수비율 : 어음발행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80% 이내에서 차등 적용

○ 보험사고사유

- 당좌부도(어음발행인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로 보험가입어음이 지급담당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거절된 경우
- 어음발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금지 또는 정지되어 보험가입어음이 지급담당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거절된 경우

이용절차

단계별	주요업무내용
보험상담	■ 보험가입대상 여부 및 가입금액 등 상담
↓	
신용조사	■ 어음발행인 및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조사
↓	
인수심사	■ 인수가능 여부, 보험금액 등 인수심사
↓	
증권발급	■ 어음과 세금계산서 원본 확인 ■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수령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고객상담실 : 1588-6565
홈페이지 : http://www.kodit.co.kr

부록

1. 융자지원 제한업종(중소기업진흥공단)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2中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운수업	491, 2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50中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1中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서비스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6911	자동차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및충전업(75994)제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제외)
보건업	86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제외)
가구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중소기업진흥공단)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사업전환융자
1	A01(농업)	0.0	600.0	1200.0
2	A02(임업)	0.0	600.0	1200.0
3	A03(어업)	149.2	447.6	895.2
4	B05~08(광업)	144.7	434.1	868.2
5	C10(식료품)	213.4	600.0	1200.0
6	C11(음료)	103.7	311.1	622.2
7	C12(담배제조업)	0.0	600.0	1200.0
8	C13(섬유제품(의복 제외))	181.8	545.4	1,090.8
9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42.6	427.8	855.6
10	C15(가죽, 가방 및 신발)	135.3	405.9	811.8
11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199.7	599.1	1,198.2
12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59.7	479.1	958.2
13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2.7	578.1	1,156.2
14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65.2	300.0	600.0
15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	190.5	571.5	1,143.0
16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68.6	300.0	600.0
17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43.3	429.9	859.8
18	C23(비금속 광물제품)	131.7	395.1	790.2
19	C24(1차 금속)	172.6	517.8	1,035.6
20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197.9	593.7	1,187.4
21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45.9	437.7	875.4
22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07.4	322.2	644.4
23	C28(전기장비)	165.5	496.5	993.0
24	C29(기타 기계 및 장비)	176.7	530.1	1,060.2
25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178.1	534.3	1,068.6
26	C31(기타 운송장비)	381.2	600.0	1200.0
27	C32(가구)	152.1	456.3	912.6
28	C33(기타 제품 제조업)	173.2	519.6	1,039.2
29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6.8	600.0	1200.0
30	D36(수도사업)	0.0	600.0	1200.0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융자
31	E37,381,382(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125.0	375.0	750.0
32	E383(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172.8	518.4	1,036.8
33	D39(환경정화 및 복원업)	0.0	600.0	1200.0
34	F41(종합 건설업)	177.8	533.4	1,066.8
35	F42(전문직별 공사업)	73.9	300.0	600.0
36	G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204.0	600.0	1200.0
37	G46(도매 및 상품중개업)	160.8	482.4	964.8
38	G47(소매업(자동차 제외))	216.6	600.0	1200.0
39	H49(육상운송업(철도운송업 제외))	341.0	600.0	1200.0
40	H50(수상 운송업)	172.1	516.3	1,032.6
41	H51(항공 운송업)	324.6	600.0	1200.0
42	H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01.9	305.7	611.4
43	I55(숙박업)	252.5	600.0	1200.0
44	I56(음식점 및 주점업)	0.0	600.0	1200.0
45	J58(출판업)	99.8	300.0	600.0
46	J59(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98.7	596.1	1,192.2
47	J60(방송업)	79.5	300.0	600.0
48	J61(전기통신업)	87.7	300.0	600.0
49	J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21.1	363.3	726.6
50	J63(정보서비스업)	76.6	300.0	600.0
51	K64~66(금융 및 보험업)	0.0	600.0	1200.0
52	L68~69(부동산업 및 임대업)	273.9	600.0	1200.0
53	M70(연구개발업)	126.3	378.9	757.8
54	M71(전문서비스업)	177.0	531.0	1,062.0
55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92.3	300.0	600.0
56	M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0.9	362.7	725.4
57	N74~75(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6.8	300.0	600.0
58	O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	600.0	1200.0
59	P85(교육서비스업)	0.0	600.0	1200.0
60	Q86~87(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	600.0	1200.0
61	R90~91(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07.6	600.0	1200.0
62	S94~96(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0.0	600.0	1200.0
63	T97~98(가구내 고용활동)	0.0	600.0	1200.0
64	U99(국제 및 외국기관)	0.0	600.0	1200.0

3.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실태조사 희망기간
201 . . . ~ . . .

업체현황	업 체 명	한글 : 영문 :	대 표 자	한글 : 영문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본사 : 지점 :	설립일자	년 월 일
	소재지(지역)	시,도 시,구,군	전 화 FAX	( ) – ( ) –

신청현황	구 분	세 부 신 청 내 용 (해당란에 ☑표시)		
	융자신청금액	□ 시설 : 백만원 □ 운전 : 백만원		
	담보종류	□ 신 용 □ 보증서 □ 부동산 □ 기 타 * 보증기관 : 기금(재단) 지점		
	융자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 성장공유형□) □ ( )은행 ( )지점		
	업 력	□ 7년미만 (예비창업자□) □ 7년이상		
	지역소재	□ 수도권 □ 지방 • 지방소재기업 중, 농공단지 입주기업 : □ ( ) 농공단지		
	세금체납 여부	□ 정상 □ 체납	벤처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제조업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공장등록 여부	□ 등록 □ 무등록
	고용창출 여부	□ 예 □ 아니오 • '09. 7월이후 5인 또는 북한이탈주민 2인 이상 추가 고용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신청기업	□정부시행 기술개발 □특허·실용신안 □정부·공인기관기술인증 □이전기술 □기술가치평가받은 기술 □ Inno-Biz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수출금융신청기업	□ 중진공 □ 한국수출보험공사(직접보증□, 수탁보증□)		
	일시적 경영 애로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 해당요건은 〈별지3〉 참조		
	재해피해기업	□ 해당 □ 해당없음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급) 보유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 첨부서류 : 정보제공동의서(기업,개인), 윤리준수약속,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1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접수번호	업체번호	관리번호	산업분류번호	담당부서

융자구분	□ **창업기업지원자금**(재창업□)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자금** (녹색신성장□ 지식/제조서비스□ 농공□) □ **긴급경영안정자금** (일반운전□ 재해복구□ 수출금융□ 일시적경영애로□)
기업구분	□ **혁신형기업** □ **녹색·신성장동력기업**
기술사업성평가	□ **해당** □ **해당없음**
사회적기업	□ **해당** □ **해당없음**

* 굵은 선 안은 중진공에서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본인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정책자금 신청 이전 및 이후 중진공이 취득한 기업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 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융자지원 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를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제출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본인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아래 항목에 대해 동의하며, 이를 「중소기업 정책자금」 평가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에 따라 귀 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신용조회회사 :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조회할 신용정보〉 :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기록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 당좌) 예금 등

〈조회 목적〉 : 1. 중진공 정책자금(융자, 출자전환, 성장공유형자금 등) **신청관련 금융거래 설정 여부**

2. 본인이 요청한 경우 또는 기타 (내용 :)

〈조회동의 효력기간〉

• 금융거래 설정을 위한 상담목적으로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실행시 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201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인)

*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표준(안)」에 따라,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중진공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윤리준수 약속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본인(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합니다.)은 각각 다음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고객의 준수사항

① 본인은 정책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중진공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융자청탁, 신청대행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②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융자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중진공 임직원 준수사항

① 중진공 임직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고객으로부터 금품,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지 않겠습니다.

② 중진공 임직원은 법령과 『임직원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1 년 월 일

고 객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체명 : _____	_____ 지역본(지)부
	담당자: _____(서명)
대 표 자 : _____(서명)	담당자: _____(서명)
	담당자: _____(서명)

부 록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Ⅰ. 기업현황

□ 개 요

<table>
<tr><td rowspan="4">연락처</td><td>대표자</td><td colspan="5">전화:( ) – 자택:( ) – 휴대폰:( ) –
※ 자금신청 처리결과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수신, □수신거부)하겠습니다.</td></tr>
<tr><td>담당자</td><td colspan="5">직위: 성명: 전화:( ) – 휴대폰:( ) –</td></tr>
<tr><td>E-mail</td><td colspan="5">대표자 : 담당자 :</td></tr>
<tr><td>홈페이지</td><td colspan="2"></td><td>FAX</td><td colspan="2">( ) –</td></tr>
<tr><td rowspan="3">소재지</td><td>본사□ 지사□</td><td colspan="5">주소 : (우)[–]</td></tr>
<tr><td rowspan="2">공장</td><td colspan="5">주소 : (우)[–]</td></tr>
<tr><td colspan="5">면적 대지: ㎡ 용도지역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지역, 기타지역( )
공장: ㎡ 소 유 □ 자가, □ 임차(소유자 :)</td></tr>
<tr><td colspan="2">주생산품목</td><td colspan="2">한글:
영문:</td><td>매출액
[수출액]
[주업종]</td><td>백만원
천불(백만원)
백만원(%)</td></tr>
<tr><td colspan="2">가동상황</td><td colspan="2">월평균( )일, 1일평균( )시간</td><td>주거래은행</td><td>은행, 지점</td></tr>
<tr><td colspan="2">생산방식</td><td colspan="2">자사제조( )%, 외주가공( )%</td><td colspan="2">주문생산( )%, 시장생산( )%</td></tr>
<tr><td colspan="2">종업원수</td><td colspan="2">사무직 명, 기술직 명, 기능직등 명, 합계 명</td><td>자 본 금</td><td>백만원</td></tr>
<tr><td colspan="2">자산총액</td><td>백만원</td><td>부채총액 백만원</td><td>자본총계</td><td>백만원</td></tr>
</table>

국세청 홈택스 자료 발급번호(※발급방법에 ☑요망)
– 발급방법[□주민등록번호활용, □사업자등록번호 활용(□본사, □지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국세납세증명원 □□□□-□□□-□□□□-□□□

○ 최근 2년간 납세사실증명원 □□□□-□□□-□□□□-□□□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최근 3개년 재무제표(기제출 회사는 제출 생략)

– 200 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

– 200 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

– 200 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

* 신청기업에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2부이상** 신청한 후 발급번호를 작성하시면 중진공이 직접 발급

* 홈텍스 발급서류를 직접 중진공에 제출하는 경우 발급번호 기재 생략 가능

□ **회사연혁(별지사용 가능)**

년 월	주 요 내 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 **관계(관련)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기업 등 지분출자관계에 있는 회사를 모두 기재)

업체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 개시일	소재지	주생산품	소유 지분

□ **대표자 경력**

<table>
<tr><td rowspan="8">대
표
자</td><td rowspan="4">학력</td><td>졸업연월</td><td>학교</td><td>학과(전공,계열)</td><td>졸업</td><td>수료</td><td>중퇴</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주요경력</td><td>기 간</td><td>근 무 처</td><td>근무처 업종</td><td colspan="3">최종직위
(담당업무)</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거
주
주
택</td><td>소재지</td><td colspan="3"></td><td rowspan="2">소유자
(관계)</td><td rowspan="2">( )</td></tr>
<tr><td>대 ㎡, 건 ㎡</td><td>임차
관계</td><td>전세 백만원, 월세 천원</td></tr>
<tr><td>설정관계등</td><td colspan="2"></td><td>기타소유자산</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동업종종사기간</td><td>년 개월</td><td>취 미</td><td></td><td>상 훈</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경영실권자 성명</td><td colspan="2"></td><td colspan="2">대표자와의 관계</td><td colspan="2"></td></tr>
</table>

* 실질경영자와 대표자가 상이할 경우 별지로 실질경영자 이력도 작성·제출바람

부 록

□ **경영진**

(　　년　　월　　일 현재)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최종학력	주요경력

□ **주주상황**

(　　년　　월　　일 현재)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 **매출현황 및 전망**

구 분	연도별 매출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　)월현재	년간		
내 수							
수출액							
합 계							
– 2009년 매출액 대비 주생산품의 매출비중 :　　%(품목명 :　　)							

– 매출세부내용(매출처는 거래비중 기준으로 50%이상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

구분		업 체 명 (연락처 tel)	거래품목 (상품 및 서비스)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비중 (%)	연간 거래액 (백만원)	거래 기간	결제조건	
								외상결재 비율(%)	외상결재 기간(일)
매출처	고정 거래처						개월		
							개월		
							개월		
	기타						개월		
매입처	고정 거래처						개월		
							개월		
	기타						개월		

* 확보된 매출처가 없는 경우에는 매출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별지 작성 첨부

* 매출처별 결제조건 중 외상매출채권 및 받을어음 규모의 최근 3개월 평균잔액을 기재

□ 기술개발실적(최근 3년이내 개발실적만 중요도 순서로 기재)

개발과제 및 내용	개발기간	개발방법 (독자개발,외주,공동개발,기타)	소요 금액 (백만원)	비 고 (사업화 현황, 참여 인원 등)
	~			
	~			
	~			

□ 규격표시 획득현황

(년 월 일 현재)

규격표시명	허가(승인)품목	허가(승인)번호	승인기관	허가(승인)일자

□ 산업 및 지적재산권 등록현황

(년 월 일 현재)

종 류	고안의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자	관리권자

*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주요 보유시설(필요시 별지작성)

(년 월 일 현재)

시 설 명	수 량	장부가격(백만원)	비 고

□ **주요 생산제품(상품 및 서비스) 개요(필요시 별지작성)**

제품용도 및 특성 (상품 및 서비스 주요내용)	
제품생산공정도	**주제품에 대해 기재하며, 비제조업의 경우 서비스 흐름도를 작성*
시 장 상 황 (시장규모,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 가격 비교)	
수요전망 및 판매계획	

II. 사업계획

□ 사업내용[(추진기간 : 년 월 ~ 년 월), 작성된 사업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가능]

사업내용 및 목적	
기대 효과	
고용창출 계획	* 직원 수 :_____명 / * 추가 고용계획 : (2010년) ____명, (2011년) _____명

* 향후 2~3개년의 사업계획 및 고용창출계획 등을 작성
* 정책자금을 활용한 설비투자(또는 대체, 증설등), 생산공정의 개선,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및 불량감소 등에 대해 금액 또는 비율을 사용하여 기재

□ 자금 소요내역

〈시설자금〉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규 격	수량	단 가	소요금액 (VAT제외)	제작사 (국산/외산)	비 고
소요자금							
총소요금액							
조달계획	자체자금						
	중진공차입금						
	은행자금등 기타						
시설 설치장소							

부 록

〈운전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소요자금	기술개발비용	개발기술평가 및 사업타당성 진단비용		
		시료개체, 실험비, 외주가공비 등 시제품 제작		
		제품·환경·포장·시각디자인 개발비		
		초기 양산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원부자재구입			
	생산비 및 부대비용			
	인건비			
	기타			
총 소요금액				
조달계획	자체자금			
	중진공차입금			
	은행자금등 기타			

주1) **개발기술사업화**의 소요자금은 기술개발비용란에 기재

주2) 수출금융 소요자금 중 인건비는 융자대상이 아님

□ **전환사채 발행 계획**(성장공유형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만 작성, 필요시 별지작성)

<table>
<tr><td colspan="3">전 환 사 채 발 행 금 액</td><td colspan="6">백만원</td></tr>
<tr><td rowspan="2">자 본
현 황</td><td colspan="2">자 본 금</td><td colspan="6">백만원</td></tr>
<tr><td colspan="2">1주당 액면가</td><td colspan="2">원</td><td colspan="2">총발행주식수</td><td>주</td></tr>
<tr><td rowspan="4">매 출
및
손익전망
(백만원)</td><td rowspan="2">구 분</td><td rowspan="2">2009년</td><td colspan="2">2010년</td><td rowspan="2">2011년
추 정</td><td rowspan="2">2012년
추 정</td><td rowspan="2">2013년
추 정</td></tr>
<tr><td>( )월현재</td><td>연말추정</td></tr>
<tr><td>매 출 액</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영 업 이 익</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당기순이익</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희 망
조 건</td><td colspan="2">1주당 전환가격</td><td colspan="6">원(액면가의 배)</td></tr>
<tr><td colspan="2">기 타 조 건</td><td colspan="6">(전환가 재조정 등)</td></tr>
<tr><td colspan="2" rowspan="4">기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td><td>종 류</td><td>발행시기</td><td colspan="2">발행금액(억원)</td><td colspan="2">전환가격(원)</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합 계</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기업공개 목표 년도</td><td colspan="6">년 (상 / 하)반기</td></tr>
<tr><td>기업공개(IPO)
추진계획</td><td colspan="8"></td></tr>
</table>

□ **해외마케팅사업 추진계획**(해외마케팅사업 참여계획이 있는 업체만 기재)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구분	'10년	'11년	'12년	구분	'10년	'11년	'12년
시기	*(예시)8월*			시기	*(예시)7월*		
지역	*상하이 첸나이*			품목	*자동차*		
수출상담회				**수출인큐베이터사업**			
구분	'10년	'11년	'12년	구분	'10년	'11년	'12년
시기	*(예시)4월*			시기	*(예시)5월*		
품목	*바이오*			입주지역	*광조우*		

※ 상기 사업외 해외마케팅사업에 대한 참여계획이 있으신 분은 아래 괄호안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

※ 무역사절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역,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지역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or.kr) 참조

□ **다음 자금신청 업체는 추가 사업계획서 작성**

- 개발기술사업화 신청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신청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재해피해 중소기업
- 중소기업 재창업자금 신청기업

Ⅲ. 약도(별지첨부 가능)

※ 주변지리정보, 대중교통수단, 주차가능여부 등은 반드시 기재

담당자 휴대폰 : _____

현장 실태조사시 확인 서류

구 분	제출서류	부수
1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민원 G4C에서 발급가능)		1부
2 금융거래 확 인 서	: 거래 금융기관 소정양식의 금융거래확인서 * 금융기관별로 모두 제출	1부
3 시설자금 신청근거 서 류	: 견적서(또는 계약서)와 카탈로그(또는 설계도면) 사본 – 경(공)매 : 낙찰허가서(계약서), 감정평가서 – 사업장인수/중고설비 구입 : 매매계약서, 기계사양 – 금형구입 : 제작업체가 작성한 견적서 * 중진공 홈페이지에 게시된 금형견적서양식 사용 – 건축 : 공장신설등 승인서(제조업체에 한함), 건축허가(신고)서, 건축계약서 * 설계도면, 건축내역서, 건설업자 등록증과 면허증 추가제시	1부
4 경영진이력, 주주명부, 조직도		1부
5 대표자의 1년간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전자민원(G4C) (http://www.egov.go.kr)에서 발급가능		1부
6 수출실적확인서(수출금융지원사업 신청기업) * 직접수출기업 : 무역협회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확인서 발급 * 간접수출기업 : Local L/C, 구매확인서 등을 통한 수출실적을 외국환은행에서 확인받아 제출		1부
7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기업) 회사 및 대표(이사) 보유 부동산 명단		1부 각 1부
8 중진공 직접 신용대출로 운전자금만 신청한 경우 고정자산대장, 회계(매입매출)장부		1부
9 임차사업장의 경우 전기료·수도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중 1종 이상의 납부 영수증		1부
※ 산업 및 지적재산권, 규격표시 인증서, 기타 인증서류 등 사본(희망기업) * **특허, 실용신안, 의장, 프로그램등록**(단,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서상에 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 성공판정공문** * ISO, KS, JIS, UL, CE 등 **국내외 규격**, Q마크 등 **품질인증** * 전·열등 **형식승인** * KT, NT, EM, IT, GH 등 **기술인증** * 벤처기업 확인서, Inno-biz 확인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 *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PL교육·컨설팅 수료증, 납세자의날 표창장 *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서, 대북투자진출 확인서류 등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09.6월 및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 고용창출기업에 한함		1부
※ 공장등록증 사본(제조업에 한함)		1부
※폐업사실증명서(재창업지원신청기업에 한함, 세무서발급)	1부	

* 굵은 글씨는 자금유형, 기업형태(개인, 법인), 사업장유형 등과 관계없는 필수서류임

4. 지식서비스업(중소기업진흥공단)

업종	KSIC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1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
○광고 대행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2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29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73903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 교육 학원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5504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8565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

5. 제조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진흥공단)

업종	KSIC
○ 하수 및 폐수처리업	3701
○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
○ 폐기물 처리업	382
○ 환경정화 및 복원업	3900
○ 도매 및 상품중개업(수출업에 한함)	46
○ 도로화물 운송업	493
○ 해상운송업	501
○ 보관 및 창고업	521
○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13
○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1
○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	52992

6. 기술혁신 중소기업 범위(기업은행)

(1)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영위기업(38개 품목)

10대 산업	품 목
1. 디지틀 TV/방송(5)	방송시스템, D-TV(Digital TV),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셋톱박스, 복합기기
2. 디스플레이(7)	LCD(Liquid Crystal Display), LED(Light Emitting Diode), PDP(Plasma Display Panel), 유기EL(Organic Electroluminescence), 3D(Three Dimensional), 전자종이, 관련소재
3. 지능형 로봇(4)	가정용 서비스 로봇, IT기반 서비스 로봇, 극한 작업용 로봇, 의료지원용 로봇
4. 미래형 자동차(2)	지능형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5. 차세대 반도체(4)	차세대 메모리, SoC(System on a chip), 나노전자소자, 관련소재
6. 차세대 이동통신(2)	4G(Forth Generation) 단말기 및 시스템, 텔레메틱스(Telematics)
7. 지능형 홈 네트워크(4)	홈서버/홈게이트웨이, 홈 네트워킹, 지능형 정보가전,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
8. 디지틀콘텐츠/SW솔루션(4)	디지틀콘텐츠 제작.이용.유통시스템, 문화콘텐츠, 임베디드(Embedded) S/W, 지능형 종합물류시스템
9. 차세대 전지(3)	2차전지, 연료전지, 관련소재
10. 바이오신약/장기(3)	신약, 바이오장기, 바이오칩

(2) 6T영위기업(38개업종 134개 품목)

그룹	업종	품목	산업분류
정보기술 관련(IT) Information-Technology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티보드 등	3001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제조	복사기, 금전등록기, 화폐분류기	3002
	절연선 및 케이블제조	광섬유케이블 등	313
	축전지제조	축전지, 일차전지, 이차전지 등	3140, 31993
	반도체 및 기타전자부품제조	인쇄회로판, 전자축전지, 액정표시장치, 전자카드 등	321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제조	유무선통신기기,네트워크장비,통신단말기, 교환기 등	3220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 제조	셋톱박스, 위성방송수신기 등	3230
	측정,시험,항해 및 기타	정보통신관련	332

그룹	업종	품목	산업분류
	정밀기기 제조		
	전자상거래		52811
	무선통신업	인터넷통신망, 부가통신, 별정통신 운용등	642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	솔루션개발, 그룹웹어, 음성데이터통합, 콘텐츠개발, 게임소프트 웨어 등	72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전문수리	정보통신관련	9212
생명기술 관련 (BT) Bio-Technology	생물의학	호르몬, 혈액관련제제, 항암제, 항생제, 성장인자류, 면역제, 신경전달물질, 백신, 진단시약, 유전자요법, 인공장기 등	242 243
	생물화학	생분해성고분자, 아미노산, 유기산, 기능성다당류, 공업용효소, 향료, 색소, 계면활성제 범용화학물질, 생체재료	241 243 1545
	생물환경	환경정화용 미생물제, 대기탈황, 탈취제, 응집제, 생물학적 환경오염처리	15454,24212 24399,29175 73101
	바이오식품	저칼로리형 대체감미료, 기능성지질, 식품첨가물, 천연식품소재, 기능성식품 소재, 발효식품, 식품용 효소 등	1545 1549
	바이오에너지	연료용에탄올, 메탄발효, 이산화탄소고정화,광합성, 바이오가스, 미생물침출 등	241,242 243
	생물농업 및 해양	인공종자 및 우량묘목, 동물백신 및 진단제, 미생물농약, 해양생물자원, 식물공장, 사료제, 형질전환 동식물 등	취급품목
	생물공정 및 엔지니어링	발효공정, 동물세포배양, 식품세포배양, 생물반응기, 생물전환기술, 분리정제공정 등	743외
	생물학적검증 및 측정시스템	안전성 및 효능평가기술, 바이오센서, 바이오칩, 진단기술, 생체기능이용물질 전환기술, 측정기기 생산기술 등	331,332 7310,7441
나노기술 관련(NT) Nono – Technology	나노소자	나노전자 소자, 나노정보저장, 가변파장광소자 등	32,33
	나노소재	나노분말소재, 광학용나노소재, 촉매.환경기능소재 등	241,242,243 261,262,331
	나노의약	나노바이오 의약품	242,243
	나노공정기술	나노공정기술 서비스	731,744
문화기술 관련(CT) Culture – Technology	출판, 음악산업	서적출판, 신문.잡지, 인쇄 및 인쇄관련서비스, 기록매체복제, 음반출판	22
	녹음시설운영업	녹음시설 운영업	87312
	게임산업	게임기제조, 게임소프트웨어제작	36943,72201
	영화산업	일반영화 및 비디오제작, 만화영화, 방송, 프로그램, 관련서비스, 영화배급업	871
	유선 및 위성방송업	프로그램공급업, 프로그램송출, 위성방송	8722
	공연산업	공연시설운영, 녹음시설운영, 공연단체운영, 공연기획 등	873
	기타문화산업	유원지 및 테미파크 운영, 전시 및 행사 대행업	88992,75994
환경기술 관련(ET)	환경용품제조	유기화합물 제조, 액체여과기 제조, 용기세척기 제조 등	취급품목

그룹	업종	품목	산업분류
Environ ment & Energy – Technology	재활용품제조	석유정제품 재처리, 폐화합물질생산, 재생고무, 재생플라스틱, 폐유리 가공제품	2322,24,251 252,262
	환경설비건설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물 및 구축물해체공사	45124,46114
	환경관련서비스	환경상담 및 엔지니어링,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서비스,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	74322,90 88232
항공우주기술 관련(ST) Space – Technology	항공기부품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	353
	항공기임대	항공기임대	62200
	항공운송지원 서비스	공항시설운영 등	6393

(3) 기술력 우수기업

대 상	인정기간	비 고
1. 기술신용보증기금 선정 우량기술기업	졸업일	기금선정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기업)	유효기간	
3. 정보통신부의 유망중소 정보통신기업	졸업일	
4. 발명장려사업 추진 요령상의 특허권 보유기업	유효기간	
5.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첨단기술기업	지정받은 날부터 2년	(구,과기부고시2007-6호. '07.5.18)첨단기술기업 지정방법에 의함
6. 특허기술평가기관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우수판정」기업	우수판정일로부터 5년	
7.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업체	유효기간	지정업체 관보에 게시
8. 지식경제부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일로부터 5년	(구,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38호)
9. 정부지정 창업보육센터(운영기관 포함)가 추천한 창업보육기업 및 실험실 창업기업	추천일로부터 5년	
10.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입주기간	
11. 벤처기업지원관련 업무협약체결기관이 추천한 우수기술 보유기업	추천일로부터 3년	
12. 중소기업청의 "대한민국 창업대전" 수상자가 창업한 기업. 다만, 수상작품관련사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 한함.		중소기업청
13. 자연계 대학교수, 자연계 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단, 과학기술분야에 한함)	창업후 7년	창업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자에 취소
14.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품종보호권을 사업화하는 기업		
15.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이상인 기업		
1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정한「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인정서 등에 의해 확인
17. 중소기업청의「신기술사업화평가」를 받은 기업중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단, 기금이 평가완료한 기업에 한함)	기술평가(심의) 완료로부터 3년	기금선정
18.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의「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 중 평가등급이 "우수"등급 이상인 기업(단, 기금이 평가완료한 기업에 한함)	기술평가(심의) 완료로부터 3년	기금선정

대 상	인정기간	비 고
19.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정보통신 산업경쟁력강화사업” 및 “정보통신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수행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기업	결과평가완료로부터 3년	
20.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센터에서 B급 이상의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	평가완료일로부터 3년	
21. 기술표준원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인증기업	유효기간	
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GH마크 인증기업	유효기간	
23. 지식경제부 등의 NEP 또는 NET 인증기업	유효기간	
24.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우수제품(GQ)마크」 인증기업	유효기간	
25. 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 품질인증기업	유효기간	
26.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수상일로부터 5년	주관기관
가. IR52장영실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나. 다산기술상		한국경제신문사
다. 특허기술상		특허청
라. 중소기업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
마. 중소기업 기술혁신상		중소기업청
바. 산업기술혁신대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한국경제신문사
아. 아모레퍼시픽 여성과학자상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자. 교육과학기술부 후원 기술과학 관련상		한국연구재단
·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한국연구재단
· 한국과학상		한국연구재단
· 한국공학상		한국연구재단
·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한국연구재단
· 젊은 과학자상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이달의 엔지니어상		한구산업기술진흥협회

(4) 부품소재산업 영위 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부품소재산업 대상 업종 영위 중소기업

특별조치법상의 부품·소재산업 대상업종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
섬유제품 제조업	1710, 1720, 1740, 17993, 17994, 179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129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4111, 24119, 24129, 2413, 24151, 24152, 2421, 24312, 24321, 24323, 24331, 24342, 24392, 24393, 24399, 244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111, 25191, 25199, 25211, 25212, 25213, 2524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6111, 26121, 26122, 26129, 26213, 26221, 26312, 26991, 26992, 26993, 26994, 26999
제1차 금속산업	27112, 27121, 27122, 27123, 27131, 27132, 27191, 27199, 2721, 2722, 2731, 2732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8121, 28122, 28131, 28132, 2891, 2892, 28934, 28941, 28943, 2899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1, 2912, 29130, 2914, 29150, 2916,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9, 292, 293, 29400, 29511, 29519, 2952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30012, 30013, 3002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11, 312, 31301, 31302, 31401, 31402, 31510, 31521, 3191, 31991, 31992, 31993, 31994, 31999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21, 322, 3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31, 332, 33321, 33322, 33329, 3340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110, 34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114, 35202, 35310, 353, 35910, 35920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6111

7. 기술담보대출 제출서류(기술보증기금)

제 출 서 류		비 고
기술과제 수행계획서	o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기재하여 원본 2부 제출	기술평가 및 신용보증 신청서 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o 최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o 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발급일자가 접수일 이전 1개월 이내일것. o 본사, 사업장 이전 등으로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동 폐쇄 등기부등본도 제출 ※ 등기부등본(전산) 발급시 말소된 이력부분 포함하여 발급	관할 지방법원등기과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 ※ 접수처에서 전산발급 가능 단, 소요경비는 사업자 부담
부 동 산 등 기 부 등 본	1) 본사 및 사업장 o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제출 o 최근 1년이내 사업장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전 등본 추가 제출 2) 대표자 거주주택 o 배우자가 공부상 분리 거주시 배우자의 거주주택 등본 추가 제출 o 최근 1년이내 주소지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전 등본 추가 제출 3) 공통사항 o 등본은 대지 및 건물포함 o 미등기인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제출 o 발급일자가 접수일 이전 1개월 이내일 것. o 본사,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 임차계약서사본 제출하되 등기부등본 제출 생략가능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 ※ 접수처에서 전산발급 가능 단, 소요경비는 사업자 부담
대 표 자 주 민 등록 등 본	o 발급일자가 접수일 이전 1개월 이내일 것 o 배우자가 공부상 분리거주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o 1년이내 주소지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발급시 주소이력 포함
재 무 제 표	o 최근 결산년도(1개년)의 재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1부 제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나 기업제시 재무제표를 접수

주1) 상기 서류 이외에도 보증종류에 따라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주2) 보증지원 가능여부 및 보증지원 금액은 보증기관이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결정함

8. 2009년 이후 결성된 벤처캐피탈의 투자조합

〈2010년 1~7월까지 결성된 조합〉

(단위 : 억원)

성격	업무집행조합원	조 합 명	결성일	결성금액	모태출자
초기기업	(주)트라이던트앤파트너스	후너스초기투자1호조합	3/25	100	○
	엘앤에스벤처캐피탈(주)	엘앤에스5호Early Stage투자조합	5/18	100	○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주)	아이엠엠그린테크펀드	6/30	100	○
중소/벤처	그린부산창업투자(주)	그린뷰티전문투자조합	3/12	100	
	캐피탈원(주)	캐피탈원다양성영화전문투자조합	3/19	50	
	LB인베스트먼트(주)	LG이노텍얼라이언스펀드	3/22	300	
	(주)아시아인베스트먼트	AI-밸류업1호투자조합	6/1	42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주)	케이티-아이엠엠투자펀드	6/1	110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주)	아이엠엠-가이저투자펀드	6/1	52.5	
	한국벤처투자(주)	KoFC-KVIC일자리창출펀드	6/21	1,200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에스브이M&A1호투자조합	6/30	210	○
	유티씨인베스트먼트(주)	유티씨한국벤처투자1호조합	7/1	150	○
신성장	한국투자파트너스(주)	KoFC-한투PioneerChamp2010-1호투자조합	6/30	600	○
	대성창업투자(주)	KoFC-대성PioneerChamp2010-2호투자조합	6/30	400	○
	보광창업투자(주)	KoFC-보광PioneerChamp2010-3호투자조합	7/5	350	○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주)	KoFC-SGI녹색산업투자조합제1호	7/7	200	
	(주)네오플럭스	KoFC-NeopluxPioneerChamp2010-7호투자조합	7/9	630	○
	키움인베스트먼트(주)	KoFC-KiwoomPioneerChamp2010-12호투자조합	7/13	200	○
	케이비인베스트먼트(주)	KoFC-KBPioneerChamp2010-8호투자조합	7/19	300	
	동양인베스트먼트(주)	KoFC-동양PioneerChamp2010-5호투자조합	7/19	370	
	원익투자파트너스(주)	KoFC-WIPPioneerChamp2010-6호투자조합	7/21	300	
부품소재	LB인베스트먼트(주)	KoFC-LBPioneerChamp2010-10호투자조합	7/9	330	○
	한화기술금융(주)	KoFC-한화PioneerChamp2010-14호투자조합	7/19	200	
	비케이인베스트먼트(주)	KoFC-BKPioneerChamp2010-13호투자조합	7/19	213	
	아이원벤처캐피탈(주)	KoFC-아이원PioneerChamp2010-15호투자조합	7/21	200	
영상	미시간벤처캐피탈(주)	미시간글로벌컨텐츠투자조합3호	5/7	150	○
게임	지온인베스트먼트(주)	지온콘텐츠펀드1호	1/19	120	○
컨텐츠	소빅창업투자(주)	소빅글로벌CG투자조합	6/8	150	○
IT	마그나인베스트먼트(주)	마그나1호투자조합	6/29	55	
	미래에셋벤처투자(주)	2010KIF-미래에셋IT전문투자조합	7/27	285	

〈2009년 결성 조합〉

(단위 : 억원)

성격	업무집행조합원	조 합 명	결성일	결성금액	모태출자
초기기업	동양창업투자(주)	동양14호초기기업전문투자조합	1/9	120	○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주)	알바트로스패스파인더투자조합	3/25	115	○
	(주)에스엘인베스트먼트	SLi9호초기기업투자조합	3/26	125	○
	(주)코오롱인베스트먼트	아이퍼시픽2009초기기업전문투자조합	3/30	130	○
	(주)바이넥스트창업투자	바이넥스트창업초기투자조합	3/30	100	○
	(주)네오플럭스	NewWave제5호초기기업전문투자조합	3/30	120	○
	플래티넘기술투자(주)	플래티넘START-UP펀드	6/15	50	○
	엠브이피창업투자(주)	mvp창투17호초기기업전문투자조합	6/26	100	○
	스톤브릿지캐피탈(주)	스톤브릿지초기기업전문투자조합	9/30	110	○
	동훈창업투자(주)	동훈초기기업전문투자조합	9/30	100	○
	선명인베스트먼트(주)	선명제1호초기기업전문투자조합	10/9	100	○
	보스톤창업투자(주)	보스톤인큐베이션투자조합	12/8	100	○
중소/벤처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주)	전남그린에너지펀드	1/23	76	○
	린드먼아시아창업투자(주)	린드먼바이아웃투자조합	2/4	41	
	유티씨인베스트먼트(주)	유티씨11호투자조합	3/19	30	
	그린부산창업투자(주)	그린부울경전략산업투자조합1호	3/24	100	○
	(주)레이앤창업투자	레이앤벤처투자조합제2호	3/30	40	
	(주)네오플럭스	NewWave제4호투자조합	4/22	280	○
	센츄리온기술투자(주)	센츄리온IT2호투자조합	4/22	33	
	CKD창업투자(주)	CKD3호벤처투자조합	4/29	75	○
	스카이창업투자(주)	스카이투자조합1호	4/30	30	
	(주)레이앤창업투자	레이앤벤처투자조합제3호	5/28	30	
	에스브이창업투자(주)	충청북도-SVVC경제특별도펀드2호	5/28	250	○
	유티씨인베스트먼트(주)	유티씨12호투자조합	6/9	30	
	이수창업투자(주)	ISU-C&H콘텐츠투자조합	6/17	75	
	일신창업투자(주)	일신신성장동력펀드	8/5	500	○
	비케이인베스트먼트(주)	BK동남광역경제권전략산업투자조합제1호	8/5	103	○
	케이비인베스트먼트(주)	09-5KB벤처조합	8/11	300	
	유큐아이파트너스(주)	UQIP신성장동력벤처조합제1호	8/25	200	○
	이상기술투자(주)	이상-신성장동력투자조합	9/8	150	○
	엠브이피창업투자(주)	09-6mvp벤처투자조합	9/8	150	
	엘앤에스벤처캐피탈(주)	엘앤에스4호그린투자조합	10/9	81	
	LB인베스트먼트(주)	09-8LB투자조합15호	10/19	300	○
	한화기술금융(주)	09-4한화벤처투자조합	10/27	500	
	한국투자파트너스(주)	09-7한국벤처조합제15호	10/27	700	○
	토러스벤처캐피탈(주)	TVC제3호투자조합	10/29	31	
	지식과창조벤처투자(주)	지식과창조녹색산업전문투자조합	11/25	32	

성격	업무집행조합원	조 합 명	결성일	결성금액	모태출자
	토러스벤처캐피탈(주)	TVC제4호투자조합	12/21	32	
	(주)이앤네트웍스벤처투자	MAF-EN농업성장투자조합6호	12/29	160	
	(주)소프트뱅크벤처스	에스비넥스트온러쉬투자조합	12/29	300	
신성장	큐브벤처파트너스(유)	큐브-MEGI투자조합	10/14	300	○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주)	에스에이치씨-아이엠엠신성장펀드	10/14	155	○
	(주)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09-9한미신성장녹색벤처조합	10/16	400	○
	튜브인베스트먼트(주)	튜브메가트랜드투자조합	12/17	510	○
	한화기술금융(주)	한화신성장동력펀드	12/21	400	○
	튜브인베스트먼트(주)	튜브신성장투자조합	12/22	83	
	스카이창업투자(주)	스카이신성장투자조합1호	12/22	77	
M&A	키움인베스트먼트(주)	키움성장10호투자조합	3/27	200	○
	(주)에스엘인베스트먼트	SLi8호벤처M&A투자조합	4/15	200	○
	LB인베스트먼트(주)	LB레오펀드14호	4/20	200	○
	인터베스트(주)	인터베스트신성장투자조합	5/13	1000	○
	원익투자파트너스(주)	HTIC-M&A투자조합	6/5	200	○
	(주)파트너스벤처캐피탈	파트너스M&A투자조합	7/16	250	○
	(주)티에스윤파트너스	티에스윤09-01M&A3호투자조합	8/4	150	○
	(주)트라이던트앤파트너스	후너스M&A1호조합	10/13	105	
	LB인베스트먼트(주)	LB제미니신성장펀드16호	12/8	979	○
영상	보스톤창업투자(주)	보스톤글로벌영상콘텐츠투자조합	2/13	314	○
	CJ창업투자(주)	CJ창투11호문화콘텐츠투자조합	2/26	100	○
	이수창업투자(주)	ISU-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5/11	212	○
	CJ창업투자(주)	CJ창투12호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11/30	419	○
게임	골드레인인베스트먼트(유)	문화산업조합	7/20	275	○
	컴퍼니케이파트너스(주)	컴퍼니케이파트너스게임전문투자조합	9/10	100	○
음반	일신창업투자(주)	일신M&C투자조합	1/23	100	○
부품소재	대경창업투자(주)	희망경제투자조합3호	2/26	220	○
공연	미시간벤처캐피탈(주)	미시간글로벌컨텐츠투자조합2호	3/4	125	○
	엠벤처투자(주)	엠벤처문화활성화투자조합	10/14	100	○
에니메이션	(주)소프트뱅크벤처스	에스비글로벌애니메이션투자조합	5/4	100	○
해외투자	컴퍼니케이파트너스(주)	컴퍼니케이파트너스글로벌익스팬션투자조합	5/7	150	○
	엠벤처투자(주)	아시아퍼시픽벤처투자조합2호	12/17	408	○
바이오	CKD창업투자(주)	CKD4호벤처투자조합	8/25	60	○
	CKD창업투자(주)	CKD스타바이오벤처투자조합	12/21	32	
	지식과창조벤처투자(주)	지식과창조바이오전문투자조합	12/21	37	
특허	(주)이앤네트웍스벤처투자	EN-특허기술사업화투자조합	9/21	100	○
IT	지식과창조벤처투자(주)	지식과창조IT전문투자조합	12/22	50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9. 기술혁신선도형기업의 범위(기술보증기금)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기업)
○ 다음 업종 영위기업중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디지틀 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신약/장기 등 10대 성장동력산업 관련 38개 품목)
– 미래 성장유망산업 영위기업
(IT, BT, NT, CT, ET, ST 등 6T산업 관련 38개 업종, 134개 품목)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
(기계공업, 전자공업, 전기공업, 항공공업, 방위산업, 정밀화학, 신소재산업, 생물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석유화학 및 석유정제업, 엔지니어링사업 등 11개 업종, 90개 품목)
–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광고, 여론조사, 연구개발업 등 20개 업종)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부품·소재 전문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설비 개발·제조, 에너지 생산)
– 신성장동력기획단 발굴 신성장동력산업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그린카, 반도체 LED등 22개)
– 지식경제부 발굴 그린에너지산업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IGCC, CCS, 전력IT, 에너지저당등 9개)
○ 기술인증 획득기업
– NET·NEP·GR마크·K마크·GQ마크·GH마크 인증기업
○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또는 기술력 인정기업
– 기금 선정 우량기술기업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련 과제 성공기업
– 중소기업청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완료한 기업
– 중소기업청의 신기술사업화평가 B등급이상 기업
– 지식경제부 선정 핵심자본재 품목 개발기업 및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특허기술평가기관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 "우수판정" 기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업체
– 기술개발관련자금을 배정받은 기업(산업기술개발자금 외 9개)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품종보호권을 사업화하는 기업
–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이상인 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특허청 등의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 평가등급 우수기업
– 지식경제부 등의 정보통신산업경쟁력강화산업 및 정보통신 우수신기술 지정, 지원사업수행결과 우수등급 기업
–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기업지원관련 업무협약체결기관 추천 우수기술보유기업
– 최근 3년이내 정부R&D 사업수행성공기업
– 대덕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 기술관련상 수상기업(IR52장영실상 외 14개, 수상일로부터 5년)

10. 혁신형 지식서비스 산업(기술보증기금)

구분	업 종	산업분류 Code
혁신형 지식서비스	전기통신업	6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광고물 작성업	713
	전자상거래업	4791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음악관련 제조업 등	5911, 5912, 5920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714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 물품감정·계량 및 견본추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73902, 73903, 73904, 73909
	보안시스템, 전시 및 행사 대행,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사업만 해당)	75320, 75992, 75993

11. 보증료율 감면대상(기술보증기금)

감 면 대 상			감면율
1 기금전담영역에 대한 보증			-0.3%이내
1. 벤처·이노비즈기업			-0.2%
2. 기술평가보증		기술사업평가등급 AAA등급	-0.3%
		기술사업평가등급 AA, A등급	-0.2%
		기술사업평가등급 BBB, BB, B등급	-0.1%
3. 기술창업기업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특례보증	-0.3%
		기금주관 창업교육 수료자(수료일로부터 3년이내)	-0.2%
		창업후 5년 이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0.1%
2 정부시책분야에 대한 보증			**-0.3%이내**
1. 장애인기업			-0.3%
2. 최근 3년이내 정부R&D 과제수행 성공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0.3%
3. 지역 전략 산업	지방기술 유망기업	평가등급 AA이상	-0.3%
		평가등급 A, BBB	-0.2%
	기타기업		-0.1%
4.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대한 협약보증			-0.2%
5. 개성공단 손실보조가입 기업			-0.2%
6.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보증			-0.2%
7. 에너지절약시설 도입자금에 대한 보증			-0.2%
8. 환위험관리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보증			-0.1%
9. 신기술사업자로서 5년이내 여성창업기업			-0.1%
10.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중점관리지정기업			-0.1%
11. 고용창출기업			-0.1%
12. 재해경감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보증			-0.1%
13.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0.1%
3 상품영역에 대한 보증			**-0.2%이내**
1. Network Loan보증			-0.2%
2. 전자상거래보증			-0.2%
3. 방송발전기금에 대한 One-Stop보증			-0.1%
4 기타영역에 대한 보증			**-0.2%이내**
1. 경영개선지원기업에 대한 보증			-0.1%
2. 경영혁신형기업에 대한 보증			-0.1%
5 한시적 협약·특례 등에 대한 보증			**-0.5%이내**
1. 재해·재난(일반재해)기업 특례보증			-0.5%
2. 대외 협약보증으로서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보증			-0.3%이내

* 감면율은 중복 적용할 수 없으며, 중복시에는 감면율이 큰 항목을 우선 적용

기술금융 활용을 위한 실무 가이드북

2010년 9월 일 인쇄
2010년 9월 일 발행

발행인 : **박 용 현**

편집인 : **박 종 용**

발행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3층
TEL : 02-3460-9030
FAX : 02-3460-9039
URL : http://www.koita.or.kr

인 쇄 : **경성문화사** (02-786-2999)

※ 본 자료의 무단복제를 금함